「형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총칙 전면개정)」에 대한 공청회

▣ 일시 : 2011년 11월 9일 (수) 15:00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406호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목 차

□ 안 건 ····· 1

□ 진 술 인 ····· 1

□ 진행순서 ····· 1

□ 진술요지

- 김일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3
-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 45
- 김주덕(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93
- 류제성(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 123
- 이 헌(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 135
- 하태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69

□ 법 안 ····· 18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 안 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총칙 전면개정)」에 관한 공청회

□ 진술인

구분	소속기관	성명 및 직위	주 요 경 력
학 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원장	o (현)변호사 김일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o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호중 교수	o 한국외국어대 법률상담소 소장 o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법조계	법무법인 태 일	김주덕 변호사	o (현) 경희대학교 법학부 교수 o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법인 양 재	류제성 변호사	o (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변호사	o (현) 홍익법무법인 변호사
	참여연대	하태훈 소장	o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o (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5:00	개 회
15:00-15:10	위원장 인사 및 진술인 소개
15:10-16:10	진술인 발표
16:10-17:30	질의·답변
17:30	폐 회

진술요지

김 일 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형법총칙 개정안에 대한 소견」

김 일 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

○ 1953 9

, ‘ , ’

.

.

○

.

2007 6 ‘

’

.

○ 2

.

. ,

30 ‘ ’

.

(“ ”)

.

○ .

- ,
- ,
- ,
- ,
- . 5

.

.

○ 5

.

1.

○

.

○

.

○

.

2.

○ 41

, , , , , , , , 9

, , , 4 .

○

.

○ ,

.

○

.

○

.

○

.

○ ,

41 ( )

1) .

.

3.

○

.

○ ,

,

,

.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570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792면, 이형국. 형법총론. 1990. 법문사 449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8. 741면

4.

○ ,

, 53

.

.

5.

○ ,

. , , ,

.

○

(high crime risk)

. (normal criminals)

(hominі insecuritas)

(portfolio) .

○

,

.

.

,

. 20

(von Liszt)

, .

.

.

1.

현 행	개 정 안
<조 문 신 설>	**제1조(죄형법정주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 2)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12 1 13 1

‘ ’ .

○

1 .

3)

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2조 (**시간적 효력**)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18세기 제정된 미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 선언에 의하여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1. 법치주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적정성의 원칙 등이 있다.

3) ※독일 형법 제1조 (죄형법정주의)
행위는 그 행위 이전에 가벌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프랑스 형법 제111-3조 (죄형법정주의)
① 누구든지 구성요건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중죄 또는 경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며, 구성요건이 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위경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형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중죄 또는 경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며, 형이 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위경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 1 ( ) ,

“ ” .

1

.

○ 1

“ ”

“ ” .

3.

현 행	개 정 안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보호주의) ① 이 법은 대한민국영역 밖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2.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제103조의 죄 3. 제105조 및 제106조의 죄 4.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의 죄 **이 법은 대한민국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 ) 6 (
) 1 2
‘ ’ .

○ 5 6
( )
.

4.

현 행	개 정 안
조 문 신 설	제7조(세계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119조의 죄 2. 제207조, 제208조 및 제212조(제211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제214조, 제218조 및 제223조(제214조, 제218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4.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1조, 제292조 및 제294조(제29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5.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

○

.

○ 6 [4] 1992 [5]

.

5.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3조(과실) 정상( )의 주의( )를 **게을리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dolus malus)

‘ ’ ‘ ’ .

---

4) ※독일 형법 제6조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범)
독일 형법은 국외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행위지법에 독립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삭제)
2. 제307조, 제308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09조 제2항 및 제310조의 원자력·폭발물·방사선에 관한 범죄
3. 항공기 및 선박 운항 방해·파괴(제316조의 c)
4. 윤락행위 및 윤락행위의 조장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및 강요(제232조 내지 제233조의 a)
5. 향정신성의약품 무허가 판매
6. 제184조의 a, 제184조의 b 제1항 내지 제3항, 제184조의 c 제1문의 음란문서 반포
7. 통화 및 유가증권의 위조(제146조, 제151조 및 제152조), 신용카드 위조, 유로첵 위조(제152조의 b 제1항 내지 제4항) 및 동죄의 예비(제149조, 제151조, 제152조, 제152조의 b 제5항)
8. 보조금 사기(제264조)
9. 범죄가 국외에서 실행된 경우에도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조약에 의거하여 형사소추될 수 있는 범죄

5) 제7조 (세계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영역 밖에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244조(폭발물폭발)의 죄,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류시켜 범한 제246조(가스·전기 등 방류)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
2. 제271조(선박·항공기 납치)·제272조(선박·항공기 운항방해)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 제273조제2항(선박·항공기 납치치사상)의 죄
3. 제288조(통화위조)·제289조(위조통화취득)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
4. 제295조(유가증권위조)·제299조(인지·우표위조)의 죄 및 그 죄의 미수범
5.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조약에 의하여 처벌할 범죄

○

,

6) 92

.

.

7)

.

○ 11

. 11 (

)

.

,

.

---

6) ※ 일본 형법
제38조 (고의,과실) ①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행위 당시 그 중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자는 그 중한 죄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다.
③ 법률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에 의하여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단,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독일 형법
제15조【고의행위와 과실행위】법률이 명시적으로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고의행위만 처벌된다.

7) 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친 개정작업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92년 정부제출 형법개정안이 기존의 법률가들에게 익숙지 못한 모습을 띠게 되어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음을 거울삼아 현행 법률이나 이론 혹은 판례에 의해 해결이 되고 있는 조문의 위치 변경이나 내용변경은 가급적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개 정 안	개 정 안에 대한 수 정 안
제11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고 **의욕한 행위는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6.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실의 착오) . .	제12조(사실의 착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15 , ,

.

○ 15

, 15

.

○ 15

.

○ 15 12

1

.

13 ( ) 11 ( )

.

,

.

○ 11 ( ) ‘

, ,

11

12 , 12

12

.

개 정 안	개 정 안에 대한 수 정 안
제11조(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실의 착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구성요건착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7.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실의 착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결과적가중범**)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운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15 ( ) 2

.

○ 15 2 “

”

‘ ’ .

○

“

… ”

.

8.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5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18 .

8) .

8) 참고로 독일 형법은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임의적 감경조항을 두고 있다.
※ 독일 형법 제13조 (부작위범)
①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결과의 불발생을 보증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부작위범의 형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9.

현 행	개 정 안
제22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위난에 대처해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21 2

‘ ’

2

‘ ’ ‘

’ .

○

.

○ 21

’

(

17). 17

(18)

.

10.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조 문 삭 제**

○ 11

.

○ .

,

.

○

,

9).

9) 일본 형법 역시 종래 '瘖瘂者의 행위는 이를 벌하지 않거나 또는 그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년 형법개정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다는 점도 참고하였다.

11.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심신장애자)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정신장애**) **정신장애**로 **행위의 불법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정신장애**로 제1항의 능력이 미약( )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스스로 정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 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 10 ‘ ’

‘ ’ .

○ ‘

’

‘

’ .

○ 3 ‘ ’ ‘

’ ‘ ’ , ‘ ’

‘

’

.

○ 9

‘ ’ ‘ ’

10).

12.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4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

,

‘

,

.

○ 2 “

”

.

“ ”

,

.

10) 주요 해외 입법례에서도 책임무능력자로 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 하였다.
※ 독일 형법 제19조 (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 Schuldunfähigkeit des Kindes) 행위 당시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
일본 형법 제41조 (책임연령; 責任年齢)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

,

.

13.

현 행	개 정 안
제26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 (**중지미수**) 범인이 자의( )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7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27 ‘ ’,

,

.

○ 11) 12)

‘ ’ 13).

---

11) 불능범이란 실행의 착수단계 이전의 상태로 애당초 형법적으로 의미 없는 행위이고,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단계를 지나 실질적 불법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현상이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8년. 524면,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7. 523면

12) ‘...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23. 선고 98도2313판결)

13) 위원회는 불능미수의 표제의 변경을 논의하면서 ‘...독일과 같이 불능미수에 대해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구분함이 상당하다...‘ 고 결론을 내렸다.

※ 독일형법

○

.

.

14.

현 행	개 정 안
조 문 신 설	**제31조 (정범) ①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

○

14)

.

○

/

,

제23조【미수의 가벌성】③ 행위자가 범죄실행의 대상이나 수단의 성질상 기수로 될 수 없음을 현저한 무지로 인하여 오인한 경우,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작량하여 감경할 수 있다.

14)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 만이 정범이고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야기에 가공한 자는 정범이 될 수 없고 공범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 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436면

, , .

○ 34 1 [15] ( )

“ ” “ ” , “

” “ ”

31 2

.

15. .

현 행	개 정 안
제34조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조 문 삭 제**

○ 34 2 ,

.

○

[16] , ,

.

15) 현행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6) 제34조제2항은 특수한 교사범·종범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특수공범설, 특수한 간접정범을 규정한 것이라고 파악하는 특수간접정범설, 그리고 특수한 교사범·종범과 특수한 간접정범 양자 모두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병합설 등이 대립되어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452면

.

16.

현 행	개 정 안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공범과 신분) 신분에 의하여 구성되는 범죄에 신분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없는 자의 형은 감경할 수 있다. 신분에 의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없는 자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되거나 감경되지 아니한 형으로 처벌한다.

○ 33

. .

.

○ 33

,

.

,

.

○ 33 1

1 2

.

○

.

17.

현 행	개 정 안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0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벌금** **4. 구류**

○ 9

, , , ,

4 .

○

.

.

.

○

(3S ; Short, Sharp and Shock), ,

.

○ .

.

○ .

(2 5)

,

( )

.

○

(“ 9 ”) .

18.

현 행	개 정 안
제51조 (양형의 조건) 항 및 항 신 설	**제46조(양형의 원칙) ① 형은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

○ 1

.

○ 46 ,

.

1

, 1

,

46 2 5

.

○

.

,

.

○ ( )

.

.

○ 17)

,

.

○ ,

46 (

) 3 ‘

‘ . 3

.

○ 2

.

.

17)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다음으로는 피고인의 수입상황을 고려하여 일수당 정액을 결정한 다음 일수에 일수정액을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하는 벌금제도

,

.

○ , 46 (

)

.

개 정 안	개 정 안에 대한 수 정 안
제46조(양형의 원칙) 형은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품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과 결과 4. 범행 후 범인의 태도와 정황 5. 형의 부과에 따른 장래의 범죄예방 및 범인의 재사회화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6조(양형의 원칙) **형의 양정은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 형의 부과에 따른 범인의 재사회화와 범죄예방의 효과도 책임의 범위 안에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품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과 결과 4. 범행 후 범인의 태도와 정황 **5. (삭제)**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9.

현 행	개 정 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2

.

.

.

1)

.

2)

.

○

.

18) .

○

.

, , , ,

(59 19)),

. , .

500

.

18) ※ 오스트리아 형법 제43조 (집행유예) (1) 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단순한 형집행의 위협 또는 다른 처분과 결합한 형집행의 위협만으로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며 다른 사람이 범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시험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야 한다. 이 때 특히 행위의 종류, 범법자의 인격, 책임의 정도, 전력, 범행 후의 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일본 형법 재25조 (집행유예) ① 다음에 정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정상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2.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있어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적이 없는 자

※ 프랑스형법 제132-31조 (자연인에 대한 형선고와 집행유예) ① 단순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자연인으로서 5년 이하의 구금형, 벌금형 또는 일수벌금형, 몰수를 제외한 제131-6조의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 몰수, 영업소의 폐쇄 및 판결의 게시를 제외한 제131-10조의 보충형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19) 제59조(집행유예의 조건)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치료 또는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

20.

현 행	개 정 안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79조(몰수의 대상) 범인이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것 3.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것 4.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것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41

.

.

.

○ 48

.

○

1

2

.

○ ‘ ’ .

.

○ ,

)

) ‘

’ 15 20) ‘

’ 9 21)

‘

, .

20) 제1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1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제8조 단서에 따른 불법수익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21) 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

1992

.

현 행 형 법	법 무 부 제 출 개 정 안	수 정 권 고 안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문서, 도화, 전파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79조(몰수의 대상) 범인이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것 3.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것 4.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것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79조(몰수의 대상) 범인이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것 3.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것 4.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것 범인이 소유하지 아니하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은 공공에 해가 되거나 범죄행위에 제공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몰수 할 수 있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몰수할 수 있다

21.

현 행	개 정 안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49조(**정상감경**) 범죄의 정상( )에 참작할 만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여러 개 있더라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 1.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4.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정상감경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을 준용한다.

○ 53

.

22) .

○ 23)

.

‘ ’

.

22)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7. 775면,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581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8. 760면,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7. 520면

23) ‘...작량감경 규정이 가장 많이 적용된 죄명은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 법정형이 중한 사건으로 전체 671건 중 74건으로 11%를 차지하고...’ 노명선 실무운영사례를 통하여 본 작량감경규정의 비판적 고찰 및 개선방안. 형법총칙개정공청회. 법무부. 2010. 88면

24) .

○

25) .

○ 53

26)

.

27) .

“ ” . ,

28) .

○ 29) ,

---

24) 노명선. 전게서. 84면

25) 예컨대 그간 법원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이유로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법상 법정형의 하한 이하로 형을 선고하여 죄형법정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작량감경의 추상적 기준이 오히려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궁극적으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까지도 받아왔다.

26) 대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여부는 원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작량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27) 대판 1958. 9.12. 선고 4291형상389, 작량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판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관은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노명선. 전게서. 114면

28) 노명선. 전게서. 84면

29) 제46조【양형의 원칙】① 형의 양정은 행위자의 책임에 기초한다. 형을 통해 행위자의 장래 사회생활에 관해 예상될 수 있는 효과는 고려되어야 한다.
② 형을 정함에 있어 법원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상호 비교교량한다. 이 경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행위자의 범행동기 및 목적
범행을 통하여 표출된 성향과 범행의지
의무위반의 정도
실행행위의 유형과 범죄의 유책한 결과
행위자의 전력, 개인적·경제적 사정, 범행 후 행위자의 태도, 특히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 범죄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행위자의 노력
③ 이미 법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상황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a【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 손해의 원상회복】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형은 면제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노력(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으로 그 범행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원상회복했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
2. 손해의 원상회복이 행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 또는 개인적 권리포기를 요하는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

30), 31)

,

. , , (,

)

---

30)제48조 (작량감경 사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형을 감경한다:
a.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방식으로 행위한 경우:
1. 참작할 만한 동기로,
2. 중한 압박감을 가지고,
3. 중한 협박의 영향 하에서,
4. 행위자가 복종하여야 하는 자 또는 의존하는 자의 유인으로 행위한 경우
b. 행위자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심각한 유혹에 빠진 경우
c. 행위자가 정황상 면책가능한 심각한 감정상의 기복상태에서 또는 중한 정신적 중압감하에서 행위한 경우
d. 행위자가 진심어린 참회로 행위한 경우, 예컨대 그에게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 경우
e. 당벌성이 범행 후 경과한 시간을 고려할 때 명백히 감소한 때 또는 이 시간 동안 올바르게 행동한 경우

31) 제33조 (양형가중사유) 특히 다음의 경우 양형가중사유이다.
1. 동종의 또는 유사한 종류의 범행을 수회 하였거나 범행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때
2. 동일한 해로운 경향에 기인한 범행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타인을 범행으로 유인한 때
4. 수인이 저지른 범행의 주모자 또는 선동자거나 그러한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을 때
5. 인종주의적이거나 외국인에게 적대적이거나 다른 특히 비난할 만한 동기로 범행한 때
6. 음흉하게, 잔인하게 또는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범행한 때
7. 범행시 타인의 무방비상태 또는 무조력상태를 이용하였을 때

제34조 (양형감경사유) (1) 특히 다음의 경우 양형감경사유이다.
1.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가 범행한 때 또는 범행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영향에서 행해진 때 또는 행위자의 지능이 낮거나 양육이 매우 소홀한 때
2.행위자가 당시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일상적인 행태에 비추어볼 때 범행이 매우 모순적인 때
3. 존중할 만한 동기로 범행한 때
4. 제3자의 영향이나 공포 또는 지배 하에 범행한 때
5. 법률이 결과의 야기를 처벌하는 경우에 결과발생방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때
6. 다수가 행한 범행에서 작은 역할만을 수행한 때
7. 단지 경솔함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때
8. 누구나 이해할 만한 강렬한 열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때
9. 미리 가지고 있던 의도보다는 특히 유혹적인 기회에 이끌려 범행을 저지른 때
10. 노동혐오에 기인하지 않는 급박한 긴급상태에서 행위를 결의하게 되었을 때
11. 책임조각사유나 위법성조각사유와 유사한 상황에서 범행한 때
12. 특히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책임을 조각하지 않는 법률의 착오(제9조)로 범행한 때
13. 범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범행이 미수단계에 그친 때
14. 더욱 큰 손해를 발생하게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의로 이를 포기하거나 범인 또는 제3자가 범인을 위하여 손해를 원상회복한 때
15. 야기된 손해를 원상회복하거나 다른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때
16. 쉽게 도주할 수 있었거나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자수한 때
17. 깊이 뉘우치면서 자백을 하거나 그의 진술을 통하여 진실발견에 크게 기여한 때
18. 오래 전에 범행하였고 그 이후 선량하게 생활한 때
19. 행위자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자가 범행 또는 범행의 결과로 인해 중한 신체상해 또는 건강훼손 또는 다른 중한 사실적 또는 법률적 손해를 입었을 때
(2) 행위자나 그의 변호인이 주장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소송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 때에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

.

○ , 68

1

,

.

○

,

4 .

○

.

22.

○

.

(, ,

,

)

32) .

○ ‘

,

32) 사회보호법 폐지 전(1984.~2005. 7.) 피보호감호자 중 전체 가출소자 12,904명의 재범률은 36.4%이었으나,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2005. 8.) 가출소자 668명의 재범률은 61.8%로 대폭 상승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보호감호 폐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급증한 점**, 그리고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이 낮다는 여론의 비판 등을 고려하여 **강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위원회는 **보호수용제도를 형법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

).

○

,

, ,

.

○ .

.

.

33)

34) .

○

.

.

.

. , ,

33) 현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4)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과나 감호처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구사회보호법(1989. 3. 25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 (88헌가5,8. 89헌가44병합)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보호감호제도 자체는 합헌임을 전제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 여부의 판단없이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적으로 보호감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열거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1989. 3. 25. 사회보호법 개정으로 보호감호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이 추가된 이래 일관되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이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대로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형법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수용은 대상범죄의 대폭 축소, 집행유예 도입, 형벌과의 차별화 등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 ,

1:1 ,

.

.

, ‘

’(10273 , 2010. 5. 4.)

.

.

.

○ 35) .

35) 제83조의3(보호수용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한다.
1. 다음 각 목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다음 각 목의 죄를 고의로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가.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4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 제1호 각 목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실형을 선고받은 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자가 그 수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실형”이란 징역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죄”란 전후의 범죄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상호간
나.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의 죄 상호간
다.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 상호간
라.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및 제294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상호간
마.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상호간
바.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상호간

75%

.

○ , , ,

, , 6

.

.

○ 2010. 10.

1 50

.

.

○

6

‘ , ‘

,

36) .

2.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상호간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기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형기는 선고형으로 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감형한 경우에는 최초로 감형된 형기로 한다.

2.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그 죄에서 정한 형이 가장 무거운 경우에는 선고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하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36) 제83조의5(보호수용의 집행유예) ① 보호수용을 선고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6개월 전에 뉘우치는 빛,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수용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로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 1953

.

,

.

○ ,

1992

.

○

2007 6 11

3

2011 3 25 .

○

,

,

,

.

○

.

진술요지

이 호 중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정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의견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 2011.3.25.

. ,

, (

40), ‘ ’

(93)

.

○ ‘ ’

.

.

, ,

.

○

.

.

-
-
-
-
-
-

. , ‘ ’
(83 83 25)

1.

○

“1. , 2. , 3. ” (
83 ~ 83 25). “ ” 2005 ( )

, “ ”

.

○ , “

‘ ,

.

” 37)

. 12 1 “

,

.” .

○ ( ) ,

,

, .

“ , , ”

.

37)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2011.4., 83-84면.

○

‘ ’

.

2. ( )

○ 2005 ( )

,

.

○

-
- (7)
-
-

○

-
- “ . . . . ”
-
-

3. 38) -

.

1)

○ ( ) ‘ ’ ‘

, ,

“ ,

”

(83 4 1).

○ ‘ ’ ‘

, .

.

•

:

“2005

.

.

.

, 2005

38) 이 부분의 서술은 필자의 아래 글을 요약, 수정한 것이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형법개정안과 인권 –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 ㅏㄴ 비판과 최소 대안 -」, 2010.12., 13-46면.

103 (1)

178

."39)

●

:

“

,

,

."40)

● , “

”

. ,

“ ”

.

○ ‘ ’

‘ ,

.

.

“ ”

,41)

.

39) 2010.9.30.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취임1주년 인터뷰(연합뉴스).

40) 김일수,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제도의 형법편입”, 법무부 주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자료집, 2010.8.25., 219면.

41) 송문호, “형법개정과 상습누범 : 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2010, 5-29면 ; 이정념, “강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감호제도의 도입방향 및 고려사항 - 대상자를 위한 친사회적인 보호감호의 도입을 중심으로”, 보호관찰학회 2010년 춘계세미나 발표문 참조.

2)

○

.

○ 2010.4.15. 30 (50)

. ,

.

, “

”, “

”,

.

.

○

.

.

- ,

,

.

( )

,

.[42)]

42) BVerfGE 35, 235.

- . ,

. ,

.

- ,

,

( ) .

○ _____,_____

_____.

.

,

.

.

- , “ ”

.

(“ ”)

. ‘

,

.

- ,

.

,

.

.

○ 2005

“ ”

.

○ ,

.

.

○ “

,

” , ( )

. _____

_____ . 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____,

_____

_____.

.

43)

43) 헌법재판소는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보호·개선·격리하여 피감호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고, 이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처분이다. 즉, 보안처분은 죄를 범한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의 위험성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조치이다”(헌재 1989.7.14. 88헌가5등 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44)

○ ,

.

,

. ,

,

‘ ,

.

● ,

. ‘

,

,

.

,

‘ ,

44) 헌재 1989.7.14. 88헌가5등 (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 “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보호감호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 하여 헌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13 1

. ,

‘

,

.

.

- .

. ,

.

- ( )

,45)

46)

45) 헌재 1996.11.28. 선고 95헌바20 ; 1991.4.1. 선고 89헌마17·85·100·109·12 사건 등의 소수의견 참조.

46) “오늘날 형벌사상은 응보가 아니라 범죄인의 개선·교육 및 그를 통한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

○ 2005

. 2005

○

○ 6

.

,

2005

.

.

. ‘ ’

○ ‘ ’ .

‘ ’

.

. _____

_____.

○

.

“

,

”(66

1) .

“ ”

.

○

,

. ,

, .

.

4.

. 47)

○

(S icherungsverw ahrung) .

66 2011 5 4

.

,

.

47) BVerfG, 2 BvR 2365/09 vom 4.5.2011.

○ .

, .

.

,

.

○ 2009.12.17.

7

' ' .

,

,

.

○ ,

. ,

.

,

.

.

○ 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_____

_____ .

,

,

,

.

○ 66

. ,

, 2013 5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icherungsverwahrung)

,

. _____

_____

_____ .

_____ ,

_____ .

. (40)

1.

○ “ , , , ” 4

.

, ( )

(42),

.

○ .

, .

.[48]

○ _____

_____, 14

_____

_____ .

48) 김성돈, “형벌제도의 정비”, 법무부 주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0.8.25., 147-148면.

2.

.

○ 1950 11 4 ‘

’ 6 , “ 1 .

, .”

,

.[49]

○ , ,

, .

2010 197 139

, 1996 14

76 .

(OECD) ,

, , .

.

○ ,

. 1996 11 28

, “ .

49)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형법개정안과 인권 –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 ㅏㄴ 비판과 최소 대안 –」, 2010.12., 59면 참조.

,

,

”

;[50] 2010 2 25 , ,

.[51]

. 37 2

○ 37 2

“

”

.

○

“ ”

,

.

.

○

,

.

‘ ’

.

50)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결정.

51) 헌법재판소, 2010.2.25. 2008헌가23 결정.

.

1)

○ 14

. ?

,

1997 1998

. ,

1998 966 2008 1,120

16% . ,

1988 1997 10

31% .

.

. , ,

.

. _____

_____

_____.

○

:52)

52) 이에 대해서는 Hood & Hoyle, *The Death Penalty - a worldwide perspective,* 4.Ed., 2008, pp.317-349 참조.

Hood & Hoyle

: “

,

.”[53]

○

,

. “

( )

?” 88.2% (67/76) “ ”

, “

” “ ” 87% (67/77)

.[54]

○ “

” . ,

- ( )

-

.

. .

53) Hood & Hoyle, p.347.

54) Radelet & Lacock, "Do executions lower homicide rates? : the views of leading criminologist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99 No.2, 2009, p.489 이하, 특히 p.505 참조.

○ .

‘ ’

.

,

.

,

. ,

.

.

.

.

2)

○

.

,

.

, _____

_____

_____.

○ _____

_____.

.

.

.

.

.

“ ” (

)

.

. (41)

1.

○ 41

“1 30 ”

“50 ” . 2010.4.15.

“1 15 ”

.

○

.

2.

○ 1 2008 6 8

“

‘ ’

”

. ‘ ’ 15 (25)

. “

” [55] 2010 3

31 30 (50)

,

55) 김성돈, “형벌제도의 정비”, 법무부 주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 자료집, 2010.8.25., 145-146면.

.[56]

.

○

, 30

(50) .

2010 3 31

.

.

○

.

-

2 .[57]

,

,

2 .

56) 김성돈, 앞의 글, 146, 151면 참조.

57)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형법개정안과 인권 –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 –」, 2010.12., 8면.

, .

○ _____

_____

___. ,

. _____(___

_____)_____

_____ .

- .

. ,

. 1980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8]

. 2004 20

. 15 ,

, , 20 , 24 .[59]

.

○

20 (30) .[60]

○ , ,

20 (30

)

58) 무기형을 폐지한 국가인 스페인은 유기형의 상한을 40년으로 비교적 높게 규정하고 있다.

59)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VI) 형법총칙 개정안 : 죄수 · 형벌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93면.

60)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VI) 형법총칙 개정안 : 죄수 · 형벌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89면.

. (40 , 44)

1.

○ , “

3S (short, sharp and shock)

”[61] .

○ 40

, .

2.

○

:[62]

- ,

(10 , 10

) (29)

,

.

- , 3

, 20

.

61) 법무부, 형법(총칙)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2011.4., 49면.

62)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제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1.4.7., 7면

- ,

.

-

, 30

5

,

.

○

6

.[63]

○ _____

_____,_____

_____

_____,_____

_____

_____, _____ .

.

63) 형법개정연구회, 형사법개정연구(VI) 형법총칙 개정안 : 죄수 · 형벌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94면.

. . (42)

1.

○ 42

. ,

.

○

, _____

_____

_____.

2.

○ ,

24

( ) 37 2 ,

25 ,

64)

○ 2009.10.29. _____

5 _____

65) .

64)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제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1.4.7., 9-11면.

65) 헌법재판소 2009.10.29. 2007헌마1462 결정.

3. 66) -

○ (felony)

('felon disenfranchisement law')

. 2006 , 48

, 36

.[67]

○ 45 1 '1

, 5 ' ' '

, . 1

,

.

[68] [69]

(2 5) , ,

(45 2 , 5).

,

(45 5).

---

66) 이하의 서술내용은 필자의 아래 글을 요약, 수정한 것이다. 이호중,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2009, 329-362면.

67) King, A debate of Reform : Felony Disenfranchisement Policy in the United States, 2006, p.1.

68) 이러한 제한은 주로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가지 자격 모두 박탈될 수 있는 경우는 독일 형법 상 평화교란죄(제80조, 제80a조), 내란죄(제81조 내지 제83a조),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범죄(제84조 내지 제91조) 등이다. 선거방해죄 등 선거범죄의 경우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제한이 가능하다(독일 형법 제108c조). 그리고 뇌물죄 등에서 공직의 박탈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다(독일 형법 제358조).

69) 독일 제45조 제5항의 규정상으로는 반드시 자유형을 선고받는 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각칙규정들은 대체로 최소한 6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자격박탈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선거권 박탈이 가능하다.

.

○ 2005 Hirst v. The United Kingdom [70]

‘ ,

’ 1983 3

1 ,

48,000

,

1 3

.

○ ‘ ’ ‘ ’ ‘

’

,

.

,

. ,

,

. “civil

death” . ‘ ’

. ‘ ’

‘

,

. _____

_____

70) Hirst v. The United Kingdom(74025/01), 38 E.H.R.R. 40 (ECHR).

○

○

42

43 42

. (49)

1.

○

,

,

.

○ (49 1) 4

.

- (1)
- (2)
- (3)
- (4)

2. -

.

○ 53

. , _____, _____

_____

_____

.

○

.

.

.

○ “~ ”

. ,

“ 7 ”(337) ,

“7 ”

. _____

_____

_____

_____ .

○ _____

_____

_____.

.

.

○ 2009 7 . 2011 7

43% .[71]

.

○

,

,

.

.

○ _____,

_____

_____.

71) 현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범죄, 강도범죄, 성폭력범죄, 횡령·배임범죄, 뇌물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이다.

.

○ ,

‘ ,

.72) .

● .

.73)

.

,

.

,

,

.

●

(

).

.

●

.

72) 법무부, 형법(총칙)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2011.4., 58면.

73) 헌법재판소 2004.6.24. 2003헌바53 결정.

-

-

.

○

, .

,

.

○ , ‘ ’

.

.

,

.

.

○ _____

34 , 48, 48a .

34 19 , 8

, 49 4

_____ .

○ 2 (

) 3 (

)

, 1 4

. (

)

,

.

. 4 ( )

○ 4 ( ) ,

.

- ,

.

.

- ,

.

“ ”

,

‘ ’ ‘ ’
.

.

.

.

○ _____

_____

_____ .

“ ”
.

,

.

3.

○ _____

_____.

,

.

○ ,

,

.

,

.

진술요지

김 주 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형법 개정안 검토의견

김 주 덕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1953

,

. ,

, ,

.

.

,

.

.

1992

. 1987 1990

,

,

.

.

.

1.

, , ,

.

,

, , .

.

,

.

2.

.

,

.

, ‘ ’

. 33

33 ,

,

.

‘ ’

,

1 ,

2

. .

3. ,

9 ‘ ’

.

,

9

.

,

,

, , ,

4

.

.

,

, , ,

4 .

“

”, “ ”
, ,

.

.

4. **,**

“ ”

.

.

.

.

,

.

,

.

.

.

.

1

3

.

1 9

10 1,500 .

,

.

. , ,

.[74]

.

1.

. , , 1

.

1

.

. 1

.

1 ‘

’ 12 1

74)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중국, 영국 등은 개별범죄에 대한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으며, 독일, 스위스 등은 누범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

2.

.

, ,

,

‘ ,

.

7 .

7 ,

. , . ,

.

.

.

.

1.

18

.

.

.

‘ ’

.

2.

.

‘

’

10 3

.

.

‘ ’

.

.

.

3.

‘ 16

,

.

.

.

,

.

4.

.

.

.

.

‘ ’

‘ ’
,

.

.

.

.

34 2

,

.

.

.

33

,

, 33

,

.

‘ ,

.

33 ,

.

.

35 1

.

35 2

‘ ’ ‘

’

. “ ,

” “ ”

.

5.

38 2 ‘ ( )

2 1

’

.

.

.

1.

.

. ,

.

.

.

.

(,)

. 2 5

.

2.

53 ‘

,

.

,

. 68

1

1

, 1 .

. (10 2)

(32 2)

2

3 .

.

.

,

.[75]

‘

, ‘

’ 2

2 , ,

2

,

.

‘ ’, ‘ ’, ‘ ’, ‘ ’, ‘

’, ‘

,

,

.

75) 형법총칙 개정과 관련해서 2010년 8월에 법무부에서 개최한 공청회 자료 중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명선 교수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종래의 작량감경 사유로 ‘동종전과 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미성년’, ‘노인’, ‘당뇨’, ‘신체 질병’, ‘우울증’, ‘음주’, ‘부양할 자녀’, ‘추행정도 경미’, ‘재범 가능성 낮음’, ‘후유증이 없음’, ‘국가유공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이 선고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일부 범죄사실이 무죄인 점’ 등 사유로 작량감경을 활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법정형의 하한을 낮추어 낮은 형을 선고하여 왔다고 합니다.

,[76]

,

, 2,

3 .

3.

.

,

500

.

3

.

76) 형사법개정특위 논의과정에서는 작량감경 규정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여러 특별법에 중형규정이 많고, 중형규정에 해당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여 중형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경을 하여 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고려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

.

.

,

.

4. .

.

.

. .

(3) (5) . ,

.

5.

.

,

.

.

, .

,

.

.

. 2007

.

,

. ,

.

.

,

. (

12 1) ,

.

(1989 3 25) 5 1

77) ,

. 1989 3 25

78) .

.

.

.

, , ,

77) 88헌가5,8, 89헌가44(병합)

78) 95헌바20 등

, , ,

. ‘

,

1:1

, .

.

.

.

.

(1)

‘ , .

.

“ ”

,

, ,

,

, , ,

,

.[79]

(2)

, ‘ 1 3 ’, ‘ 5

’, ‘ 5 ’

. 5 2 ‘

’ 2

‘ 1 ’,

‘ 5 2 ’

79) 실제로 2005년 가석방 대상자 중 대입합격자(12명), 기사 기능장 취득자(2명)는 가석방 후 재범을 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 5 3 ‘

,

, 3 ‘

5 ’ .

.

(3)

,

70% .

, , , [80], , 6

[81].

(4)

‘ ,

80) 상해죄가 포함된 것은 조직폭력배에 의한 상해사건의 경우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수용조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라 보여집니다.

81) 보호수용요건을 엄격히 정한 결과 법무부가 발간한 형법총칙 제안이유서에 의하면, 2010년 10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수형자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개정안 상의 보호수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에 50여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1년 한 해 보호감호 집행인원 1,603명의 3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

‘

’ ‘ ’ .

.

.

6

.[82)]

.

82) 이는 독일 형법상 중간심사제도(독일 형법 제67조e)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

,

.

.

.

‘ ’

.

진 술 요 지

류 제 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의견

류제성 변호사

1.

○ ,

.

○

- , “

, , ” (83),

(83 3 83 8).

○

○ (40)

○ “1 30 ”

“50 ” (41)

○ 53 ‘ ’ ,

‘ ’

(49)

○ (54)

○ (58)

2.

.

(1)

○ 2005.7

.

○ “

.” (1996.11.28. 95 20, 1991.4.1. 89

17 85 100 109 12)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2010 9 30. 1

( ) ,

.

○ ( ) “

,

” (83 4)

.

.

○ ( )

.

.

(4)

○ 2005

-

-

-

12

- 10

.

○

.

○ 6

.

(5)

○

1998 , 2002

, 2004

.

○ 2009. 12. 17.

, 2011. 1. 13.

, 2011. 5.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2 25. ,

“

,

.”( ), “

.”( ), “

.”( ) .

○ “

,

” (2003.6.13.

2003 924)

○

37 2

.

,

.

○

.

.

.

○ 2010.4.15.

,

.

○

. , , 5

, 30

50 5

50 ,

.

○

.

○

.

○ 2010.4. .

,

, .

.

.

.

○

.

○

(

),

.

○

.

○ ,

, .

○

.

○ 49 1 4 ‘ ’

,

.

○

. , ,

, ,

,

.

○

(

, ,

).

.

.

○ (300) 1

.

○ ‘ ’

.

.

○

.

○ 500 3

.

진 술 요 지

이 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진술요지서(형법 공청회 관련)

변호사 이 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1.

. 1953

, , ,

.

.

2007 4

(‘ ’) .

.

. ,

.

, , ,

.

.

,

,

83).

2.

.

(1) ‘ ’

,

, ,

, ,

,

83) 입법정책이나 종전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작위범(안 제15조), 과잉방위에 따른 면책사유(안 제17조 제3항), 긴급피난(안 제18조 제2항,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안 제22조 제3항), 법률의 착오(안 제24조), 정범(안 제31조),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 삭제(현행 제34조 제2항), 공범과 신분(안 제35조), 양형의 원칙(안 제46조), 친고죄에서의 자복(안 제47조 제2항), 선고유예(안 제54조 내지 제56조) 등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방법,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대하여는 따로 논하지 않는다.

.

(2) 1953

9

.

,

.

(3) 9 4 ,

,

.

.

.

2

1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1) ( ),
, ( )
. ,
.

(2) ‘
’ ,
(
) , (
) ,
( )
,
.

3.

. (1)

1 ( )
.

(1)

12 1

“ ... .

” , 13 1

‘

...’ .

(2) 1 1

.

(3)

.

, ‘

, , , ,

‘ ,

.

(4)

.

.

. (7)

7 ( )

.

1. 119

2. 207 , 208 212 (211)

3. 214 , 218 223 (214 , 218
)

4. 287 289 , 291 , 292 294 (293
)

5.

(1) , , ,

,

, ,

.

(2)

84) ,

,

“ ”

.

(3)

6.25 ,

(ICC)

,

85) .

.

(4)

,

84)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85) 부산지방법원은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체포된 뒤 국내로 압송되어 구속·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국내에 구금되었으므로 현재지인 국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부산지법 2011.5.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참조).

,

,

.

. (22)

22 ( )

.

1 ( )

.

1 2 .

(1) 10 ( )

.

(2) , ,

,

.

“

”

8 12

(3) ( ) ( )

( ) ( )

‘ ’

(4) ‘ ’

(20), (11)

, “ ”

. (11)

(1) 11 ‘ ’

1953

,

.

(2) ,

.

(3)

11

,

.

(4) ‘ ’

.

, ‘

,

2 1

‘ ’

86) .

86)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7 , 28)

27 ( ) ( )

.

28 ( )

.

.

(1) ‘ ’

87) ,

88) .

(2) 27 ‘ ’ ‘

.

.’ ‘ ’ ‘ ’

,

‘ ’ ‘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해당 법에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뿐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음주 및 약물에 의한 감경사유 폐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87)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참조

8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 참조,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 .

(3)

27 ‘ ’ ‘ ’

.

. (40)

40 ( ) .

1.

2.

3.

4.

(1) 41 , , , ,

, , 9 ,

, , .

, , , 4

.

(2)

.

“ (110 4

,

)

,

37 2

, 250 1

,

,

5

” 89).

90) ,

.

,

.

89)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일부 위헌의견 1명, 위헌의견 3명

90)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3)

.

,

.

. ,

,

, ,

.

,

‘ ’

.

67

( )

.

(4)

( )

.

,

.

,

,

.

“

”

,

“

,

,

,

‘

,

”

91) .

(5)

,

(2 5)

, ,

,

.

91)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결정

,

,

.

(6)

,

.

.

.

‘ ’

.

.

. (76 , 82)

76 ( ) , ,

.

.

82 ( )

5

.

.

(1)

79 ( ) ‘

’ .

‘ ’

,

.

,

92),

.

253 3

93)

2

.

.

(2)

3

92) 법무부 2010. 10. 25.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외 체류로 인한 형 미집행자가 2006년 25%, 2007년 24%, 2008년 28%, 2009년 34%로 꾸준히 증가 추세라는 것이다.

93)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p¢`µ`Ñ {• wÂõ u- jy [õ Zé Z u- „E„ u |E Yí uev b w- s7s1 ƒñ[õ p ^–uE j j, u)fI w¾vƒM p j s½ s³ `Ñ`• ƒI Z±gi Yíw-ZÍ uuZÍ uñ w®`í •¢f&ua^…uñ u™jy{ p uE Z²t• t- Z ua u™•u-`¶u} iü ^–km ƒ)u}s½`í ƒa {• wÂõ ^–kmgi Z v ƒM p `Õua^…u-`¶u™•s½`í ƒI v]n™'|E a± Z•sÙb s¡ uu c9i‰s½{• wÂõ s½`í ƒI ƒñ[õ^–kmu ua c•s¡w±Ñ`• uEZ™a± v pÉb ZÍ uup¢`µ`Ñ

[{I [é s¥fMs½já a±b ^¡t–s½uEƒEha {• wÂõ uE pÑv w¾vgMua a± b w- s7`• Zpu)fI ^..~-^™ZÍ €¦…uZío%p €¦Z²j, {ƒ.0 9 T 0 B 0

. (58)

58 ( ) 3 500

46 2

1 5

. ,

3

.

(1)

,

.

.

(2)

.

,

,

.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판결에 참고토록 하는 법원조사관 제도에 대하여 재판 과정에서 법원 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참작해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는 것이다.

(3)

. 500

, 3

,

, ,

97)

.

(4)

, 1-3

,

.

97) 일본의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라고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 (49)

49 ( ) ( )

.

.

1.

2.

3.

4.

48 1 .

(1)

.

.

53 ‘ ’

‘

’ .

(2)

.

53 ‘ ’

56

,

. 55

,

.

(3)

‘ ’, ‘

’, ‘

,

,

.

(4) 98)

, ,

98) 독일 형법은 제46조에서 양형의 원칙으로 행위자 책임의 원칙을 선언하고 형벌의 특별예방기능을 충분히 감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스위스 형법 제48조는 정상에 참작할만한 일반적 요소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는 법정형 최하한 이하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오스트리아 형법도 양형가중사유 7가지, 감경사유 19가지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 ’ ‘

’ ’

4

.

(5) , 2010. 8

“5. , ,

”

5

, ‘ , , , ’

99), .

.

,

, 81

2

100).

99) 상습절도로서 버려진 고철을 주어감으로써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제1사례), 다단계사기의 직원으로서 특경가법에 해당되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사례)

100) 대법원은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참조).

. (83 83 11)

(1)

,

,

.

,

.

(2) ,

, ,

.

, 12 1

,

, ,

, .

(3) ,

.

.

,

.

.

(4)

, .

101)

,

.

,

‘ ’

,

102).

.

(5) ,

,

,

101) 헌재 1989. 7. 14. 88헌가5 결정

102) 헌재 1996. 11. 28, 95헌바20 결정

,

.

.

(6)

103) ,

, , , ,

, , 6

,

104) .

, ,

105) ,

103) **【보호감호 폐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 현황】**

연도별	가출소 인원	재범 인원	재범률
2005년도	407	234	57.5
2006년도	167	113	67.7
2007년도	66	48	72.7
2008년도	28	18	**64.3**
합계	668	413	61.8

104) 과거 구 사회보호법상 상습절도로 인한 보호감호 선고는 70%를 초과하였다.

105) **【상습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대 책	국 가	내 용
형벌가중	미국, 일본	○ **미국** : 1994년 중죄 3범자는 무조건 2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 **일본** : 2004. 2. 강력범 법정형을 최고 30년으로 높이는 형법

.

(7) ,

.

“

,

”

106) .

,

,

.

4.

		개정안을 마련
보호감호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대다수 유럽국가	**《보호감호 기간》** ○ **독일** : 장기 10년(재범시는 제한없음) **※ 독일의 필요적 보안감호 대상범죄 :** 선고형 2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고의적 범죄 ○ **오스트리아** : 장기 10년 ○ **노르웨이** : 장기 5년, 법원이 갱신하는데 갱신횟수는 제한 없음 ○ **덴마크** : 단기 4년, 장기는 제한 없음 ○ **스웨덴** : 단기 1년, 장기 12년 ○ **이탈리아** : 단기는 상습범 2년, 직업성 범인 3년 등, 장기는 제한 없음 ○ **벨기에** : 20년 **《보호감호 집행방법》** ○ **독일** : 교정시설에서 집행 ○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 특수시설 ○ **이탈리아** : 농원 교도소, 노동소에서 집행

106) 2011. 10. 31. 법률신문 제1면 보도

.

,

.

,

.

,

, .

,

,

.

,

18

다.

진술요지

하 태 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Ⅰ.

1953

,

.

2007 6

,

.

(2011.3.24. 11304) .

.

.

, .

2010 10

‘ ( )’(2010-216)

.

,

.

‘ ’ ,

‘ ’

.

,

.

II.

83 ‘ ’ 2005

,

.

49 1 ‘ ’

,

.

.

46 3

, ‘ ’

.

2010 4 30 ,

50 .

,

‘ ’ , ‘ ’ .

,

.

,

.

,

. . .

,

.

III.

1. ( )

(1)

83 ‘ ’ ‘ ’ .

. . . . ‘

’ .

7 , ‘

, ’(83 4) (

107)).

107) 구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호감소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한다.”고 규정

83 5 ‘ ’

6 .

(2)

(83

2),

(1) .

2005 ‘ ’

.

2005 “

,

.”[108] .

.

.

108)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최용규 의원 발의(2005.8.4. 공포)

‘ ’

109).

. 83 4

. ‘

’ .

’

.

(S icherungsverw ahrung)

2009

’

. (2010.12.22. 2011.1.1.)

5 “

.”

2013 5 31

109) 신양균, “보호감호 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편입”, 법무부 주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 자료집(2010.8.25)

(BVerfG, 2 BvR 2365/09 vom 4.5.2011).

(; , ,
) , 1
, , 2 10
. 2008.3.31. 448
15
.
, 2
, , ,
.

2005
( ) ,

.

. ,
50

.

(83

3), 6

(83 5).

.

(83 12)

.

.

.

2. ( )

(1)

49 1 ,

,

,

, .

(2)

.

200

, ,

.

, ,

.

,

.

.

3.

(1)

46 3 “

.” .

(2)

, .

.

,

‘ ’ .

.

4.

(1)

1 300

(54), ,

(55).

(2)

300

.

, 300 1

. .

46 2 ‘

’ .

.

5.

(1)

3 500

’

1

(

58).

(2)

.

500 3

.

.

Ⅳ.

1.

(1)

2010.4.15 30 , 50
(41).

(2)

15

15 30 ,
25 50
.

,

‘ ’[110] .

.

“

110) 한인섭, “유기징역의 상한-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형법개정안과 인권」토론회 자료집(2010.11.5)

‘

,

”111) . 112)

,

.

, ,

.

113) .

,

,

114) .

.

, ( )

.

,

111)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제1소위 제8차 회의(2008.6.)

112) 김성돈, “형벌제도의 정비”, 법무부 주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 자료집(2010.8.25)

113) 이인석/임정엽,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2010 가을), 39면

114) 이인석/임정엽, 앞의 논문, 46면 이하

.

.

.

(, ,) .

.

.

.

,

.

.

2.

(1)

40 , ,

, , . ‘ ,

,

,

,

. .

.

(2)

2007 4 27 [115]

2007 12 29

‘ (Abolitionist in practice)’ ,

. 1997 12 30 23

13 .

.

2010.3.16. ‘

’ .

‘ ,

115) 국제사면위원회,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현황 보고서(2007년 4월 27일자)

116) ,

. ,

(UN , 1988 2002). 2010 4

197 139 117).

,

,

.

, ‘ 118)

‘ , .

15

7 2

119).

10

. .

,

.

116) “우리는 사형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국 형사법교수 132명 공동성명 (2009.3.13)

117) 허일태, “법무부 형법개정안의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필요성”,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형법개정안과 인권」토론회 자료집(2010.11.5)

118)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박선영 의원안(의안번호 180928, 2008.9.12 제안), 김부겸 의원안(의안번호 1806259, 2009.10.8), 주성영 의원안(의안번호 1809976, 2010.11.22 제안)등이 있음

119) 헌재 1996.11.28, 95헌바1 결정

.

13 [120].

,

,

.

. 9

5 , 4

.

120) 헌재 2010.02.25, 2008헌가23

법　　안

	11304

: 2011. 3. 25.
:

====

1953

,

,

,

.

====

. (1)

.

. (7)

, ,

.

. (11

)

.

. (15)

.

. (17 3)

‘ ’

.

. (18 2 3)

,

‘ ,

.

. (22 3)

.

. (24)

( )

.

. (31)

,

.

. , (34

2)

,

,

.

. (35)

,

.

. (40)

, , ,

, , , 4 .

. (46)

.

. (47 2)

, ( )

.

. (49)

,

.

. (54 56)

1) 1 300

,

, .

2)

,

.

. (58 61)

1) 3 500

,

1

.

2) , ,

,

, , ,

.

. (64 1)

,

.

. (76)

.

. (79 , 81 82)

1) , , ,

,

,

, ,

.

2)

,

5 .

. (83)

, ,

.

. (83 2)

.

. (83 3 83 8)

1)

, 1 3

5

5 , 1

.

2) ,

,

.

3)

6 , ,

,

2 7

.

. (83 9 83 11)

1)

,

,

( )

.

2)

,

,

.

.

1 .

1

1 1 .

1

1 8 .

1 ( )

.

2 ( )

.

( ) ( )

.

.

3 ( )

.

4 ( )

.

5 ( )

.

6 ( )

.

1. 87 90

2. 92 101 103

3. 105 106

4. 225 230

1

. ,

.

7 ( )

.

1. 119

2. 207 , 208 212 (211)

3. 214 , 218 223 (214 , 218

)

4. 287 289 , 291 , 292 294 (29

3)

5.

8 ( )

.

8 “ 2 ” “ 1 ”

.

9 .

9 ( )

. , .

9 “ 2 ” “ 1 ”

.

10 24 .

10 ( )

.

11 ( )

. ,

.

12 ( )

.

13 ( ) ( ) ( )

.

14 ( )

.

15 ( )

.

.

16 ( ) ( ) ( )

.

17 ( )

.

( )

.

2

,

.

18 ( )

.

1

. .

1 2 17 2 3

.

19 ( ) ( )

.

1

.

20 ( )

.

21 ( ) , ,

.

22 ( )

.

1 ( )

.

1 2 .

23 ( ) 14 .

24 ( )

( )

.

1

.

24 “ 2 ” .

25 .

25 ( )

,

.

25 “ 2 ” .

26 29 .

26 ( ) ( )

.

.

27 ( ) ( )

.

28 ( )

.

.

29 ( ) .

29 “ 3 ” .

30 .

30 (,)

.

30 “ 3 ” .

31 34 .

31 ( ) ( ) .

.

32 ( ) 2

.

33 ( ) ( )

.

.

.

34 ( ) ( )

.

34 “ 4 ” .

35 .

35 ( )

32 34

. .

.

35 “ 4 ” .

36 .

36 ( )

.

36 “ 5 ” .

37 39 .

37 ( )

.

1. :

.

2.

: ( )

2 1 ,

.

.

3. :

.

38 (, ,

)

.

.

.

1 2

( ) .

39 ( ) 1

.

39 “ 3 ” “ 1 ”

.

40 .

40 ( ) .

1.

2.

3.

4.

40 “ 3 ” “ 1 ”

.

41 45 .

41 ( ) , 1

30 .

50

.

42 (,) ,

.

1.

2.

3.

4. , , ,

1 1 3

.

43 ( ) 10 . ,

10 .

44 ( ) 1 30 .

45 ( ) 40 .

,

.

1 2 ( )

.

45 “ 2 ” .

46 50 .

46 ( )

.

.

1. , ,

2.

3. , ,

4.

5.

.

47 (,)

.

, ( )

.

48 ( )

.

1. : 20 50

.

2. : 10 50

.

3. : 2 1 .

4. : 2 1 .

5. : 2 1 .

.

49 ( ) ( )

.

.

1.

2.

3.

4.

48 1 .

50 ( ) 1

.

50 “ 2 ” .

51 53 .

51 ( )

.

1.

2.

3.

4.

52 ( ) (

“ ”) ,

.

1 1 ,

1 .

53 ( )

.

.

53 “ 3 ” .

54 57 .

54 ( ) 1 300

46 2

. ,

.

.

55 ( )

( ) ,

.

1 1 .

.

56 ( )

.

55 1 ,

.

57 ( )

2

.

57 “ 4 ” .

58 .

58 ( ) 3 500

46 2

1

5 . ,

3

.

1

.

.

58 “ 3 ” .

59 .

59 ( )

, , , .

1

. ,

.

.

59 2 .

60 61 .

60 ( )

.

61 ( ) 59 1

, , ,

.

61 “ 4 ” .

62 .

62 ( )

.

62 “ 5 ” .

62 2 .

63 65 .

63 ( ) ( ) .

64 ( ) ,

.

.

65 ( ) 30

. , ( )

.

1 3

.

65 “ 5 ” .

66 67 .

66 ( )

.

67 ( )

( )

.

67 “ 6 ” .

68 71 .

68 ( )

20 ,

3 1

.

1

.

69 ( )

.

68 2

.

70 ( )

10 , , 10

.

. ,

.

71 ( )

.

.

71 “ 6 ” .

72 73 .

72 ( )

.

.

73 ( )

.

73 “ 7 ” .

73 2 .

74 76 .

74 ( )

.

75 ( )

.

1. : 30

2. : 20

3. 10 : 15

4. 3 : 10

5. 3 : 5

6. : 3

7. : 1

76 ( ) , ,

.

.

76 “ 7 ” .

77 .

77 ( ) , ,

,

.

77 “ 8 ” .

78 .

78 ( )

.

,

.

1. 3 : 10

2. 3 : 5

3. : 2

.

1. 1 1 2 2 1

2.

3.

78 “ 9 ” .

79 80 .

79 ( )

, ,

.

1.

2.

3. 2

4.

1

, ,

.

80 ( ) 79 , ,

( ) .

, ( ),

.

80 “ 8 ” .

81 82 .

81 ( ) 79 (80 2

) 80 1

.

82 ( )

5

.

.

1 4 .

4

83 .

83 ( ) .

1.

2.

3.

83 2 83 25 .

83 2( ) ,

.

83 3( )

.

1. 1 3

5

5

1

. 164 168 , 174 (164 1 , 165 ,

166 1), 250 254

, 257 259 , 287 289 ,

294 (287 289), 29

7 301 , 301 2, 302 , 303 , 305

, 333 340 342 (333 340

)

.

2. 1 1

5

2

3.

5

1 1 2 “ ”

.

1 2 3 “ ”

.

1.

. 164 168 174 (164 1 , 165 , 166 1)

. 250 254

. 257 259

. 287 289 294 (287 289)

. 297 301 , 301 2, 302 , 303 305

. 333 340 342 (333 340

)

2. 1

1 1

.

1. .

.

2. 1 1

2 1 ,

1 1

.

3. .

83 4( )

,

. , .

7 .

83 5( )

6 , ,

.

1

2 7

.

83 6( ) 83 5 1

83 3

1 1

.

83 7( ) 83 5

83 19 1 2

.

83 8( )

.

83 9( )

.

1. 22 1 22 2

2. , , , ( )

, ,

3. , (

)

. 297 301 , 301 2, 302 , 303 ,

305 339

.

83 10( )

.

83 9 1 3 15

, 83 9 2 2 .

83 11( )

,

.

1. : 1

2. :

83 12( )

.

1 ,

6

.

1 6

, , ,

.

.

.

5

6 .

83 13( )

83 19 1 1 3

.

1

.

83 14( ) 83 3

83 9

.

83 15( )

.

1

.

83 16( )

.

.

. , 83

9 1 3 83 9 2

83 9 2

83 9 1 3

.

.

.

83 17( )

42 1 1 3 .

83 18( )

.

.

1. 83 9 1 3 : 10

2. 83 9 2 : 7

,

, ,

.

.

83 19( )

.

1.

2.

3.

4.

83 3 1 1

3

.

83 20( )

.

83 19

83 21

.

83 21( ) 83 19 1 1 3

5 . ,

5

.

83 19 1 2

.

83 19 1 4 7

. , 83 9 1 3

5

.

83 19 2 1 5

.

83 22( ) 83 19 1 2 4

2

1

.

83 23(

) 83 19 1 1 3

.

83 24( ) 83 19

.

1. 83 12 5

2.

3.

4.

83 25( ) 83 12 5

,

.

83 25 “ 5 ” .

84 86 .

84 ( ) ( ) ( ) ( )

.

85 ( ) ( ) .

, ,

.

86 ( )

1 .

1 5 86 2 .

86 2( ) .

87 1 .

1. ( ) .

87 2 “ ” “ ” ,

3 “ ” “ ” .

88 “ ” “ ” .

90 1 “ ” “ ” .

105 “ , 10 ” “ ” .

106 “ , 5 ” “ ” .

107 1 2 “ ” “ ” .

108 1 2 “ ” “ ” .

109 “ ” “ ” .

111 1 “ ” “ ” , 3

“ ” “ ” .

112 “ ” “ ” .

114 2 “ ” “ ” , 3

.

115 “ ” “ ” .

116 “ ” “ ” .

122 “ 3 ” “ ” .

123 “ , 10 ” “ ” .

124 1 “ 10 ” “ ” .

125 “ 10 ” “ ” .

126 “ 5 ” “ ” .

127 “ 5 ” “ ” .

128 “ 5 ” “ ” .

129 1 “ 10 ” “ ”

, 2 “ 7 ” “ ” .

130 “ 10 ” “ ” .

131 3 “ 10 ” “ ”

, 4 .

132 “ 7 ” “ ” .

136 2 “ ” “ ” .

139 “ 10 ” “ ” .

171 “ ” “ ” .

173 2 1 2 “ ” “ ” .

189 2 “ ” “ ” .

203 .

204 .

204 ( ) 198 202 2

.

209 “( )” “( )”

, “10 2 ” “2 ”

.

220 “( )” “( )”

, “10 2 ” “2

” .

230 “ ” “ ” .

233 “ , 7 ” “ ” .

236 “ ” “ ” .

237 .

238 3 .

245 “ , ” “ ” .

246 1 “ ” “ ” .

248 3 “ ” “ ” .

256 .

257 1 “ , 10 ” “ ” .

260 1 “ , ” “ ” .

264 265 .

266 1 “ , ” “ ” .

267 “ ” “ ” .

268 “ ” “ ” .

270 4 .

279 .

280 “ 4 ” “ 276 278 ” .

281 1 2 “ 276 280 ”

“ 276 278 280 ” .

282 .

283 1 “ , ” “ ” .

285 .

286 “ 3 ” “ 283 284 ” .

288 3 289 3 .

293 .

293 (, ,

) , 292

2 10 .

295 “( )” “( )”

, “10 2 ” “2 ”

.

296 “ 293 2 ” “ 293 ” .

304 305 2 .

306 “ 297 300 302 305 ” “ 297

300 , 302 , 303 305 ” .

307 1 “ ” “ ” , 2

“ , 10 ” “ ” .

308 “ ” “ ” .

309 1 “ ” “ ” , 2

“ , 10 ” “ ” .

311 “ ” “ ” .

316 1 “ ” “ ” .

317 1 “ , 10 ” “ ” .

325 1 “ 10 ” “ ” .

331 2 “ , ” “ ” .

332 341 .

342 “ 329 341 ” “ 329 331

, 331 2 333 340 ” .

344 “ 329 332 ” “ 329 331

331 2” .

345 .

348 2 “ , ” “ ” .

351 .

352 “ 350 351 ” “ 350 ” .

353 358 .

360 1 “ ” “ ” .

363 .

364 “ ” “ ” .

365 1 2 “ 3 ” “ 362 364 ”

.

1 ( ) 2 .

, 43 , 47 , 49 , 52 1 , 76 , 82 ,

136 304 .

2 ( )

. ,

.

3 ( )

.

4 ( ) 82 1

.

5 ( ) 83 3

.

6 ( ) 1

52 1 1

52 1 “ ” “ ,

” ,“ ” “ ” .

7 (1) 1

.

8 ( )

, , , ,

, , , , .

, ,

, .

9 ( )

, ,

.

10 ( )

.

第1編 總則 第1章 刑法의適用範圍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第1條(犯罪의成立과處罰) ①犯罪의成立과處罰은行爲時의法律에依한다 ②犯罪後法律의變更에依하여그行爲가犯罪를構成하지아니하거나刑이舊法보다輕한때에는新法에依한다 ③裁判確定後法律의變更에依하여그行爲가犯罪를構成하지아니하는때에는刑의執行을免除한다	제1조(죄형법정주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第2條(國內犯) 本法은大韓民國領域內에서罪를犯한內國人과外國人에게適用한다	제2조(시간적 효력)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신법(新法)을 적용한다.

	③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第3條(內國人의國外犯) 本法은大韓民國領域外에서罪를犯한內國人에게適用한다	제3조(속지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한다.
第4條(國外에있는內國船舶等에서外國人이犯한罪) 本法은大韓民國領域外에있는大韓民國의船舶또는航空機內에서罪를 犯한外國人에게適用한다	제4조(속인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第5條(外國人의國外犯) 本法은大韓民國領域外에서다음에記載한罪를犯한外國人에게適用한다 1. 內亂의罪 2. 外患의罪 3. 國旗에關한罪 4. 通貨에관한罪 5. 有價證券, 郵票와印紙에關한罪 6. 文書에關한罪中第225條乃至第230條 7. 印章에關한罪中第238條	제5조(기국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第6條(大韓民國과大韓民國國民에	제6조(보호주의) ① 이 법은 대한

對한國外犯) 本法은大韓民國領域外에서大韓民國또는大韓民國國民에對하여前條에記載한以外의罪를犯한外國人에게適用한다 但行爲地의法律에依하여犯罪를構成하지아니하거나訴追또는刑의執行을免除할境遇에는例外로한다	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2.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제103조의 죄 3. 제105조 및 제106조의 죄 4.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의 죄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7條(外國에서받은刑의執行) 犯罪에依하여外國에서刑의全部또는一部의執行을받은者에對하여는刑을減輕또는免除할수있다	제7조(세계주의)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119조의 죄 2. 제207조, 제208조 및 제212조(제211조의 미수범은 제외

	한다)의 죄 3. 제214조, 제218조 및 제223조(제214조, 제218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4.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1조, 제292조 및 제294조(제29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5.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
第8條(總則의適用) 本法總則은他法令에定한罪에適用한다 但그法令에特別한規定이있는때에는例外로한다	제8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죄를 범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第2章 罪	<삭 제>
第1節 罪의成立과刑의滅免	<삭 제>
第9條(刑事未成年者) 14歲되지아니한者의行爲는罰하지아니한다	제9조(총칙의 적용) 이 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삽 입>	제2장 죄
<삽 입>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第10條(心神障碍者) ①心神障碍로因하여事物을辨別할能力이없거나意思를決定할能力이없는者의行爲는罰하지아니한다 ②心神障碍로因하여前項의能力이微弱한者의行爲는刑을減輕한다 ③危險의發生을豫見하고自意로心神障碍를惹起한者의行爲에는前2項의規定을適用하지아니한다	제10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第11條(聾啞者) 聾啞者의行爲는刑을減輕한다	제11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12條(强要된行爲) 抵抗할수없는暴力이나自己또는親族의生命身體에對한危害를防禦할方法이	제12조(사실의 착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

없는脅迫에依하여强要된行爲는 罰하지아니한다	지 아니한다.
第13條(犯意) 罪의成立要素인事實을認識하지못한行爲는罰하지아니한다 但法律에特別한規定이있는境遇에는例外로한다	제13조(과실) 정상(正常)의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第14條(過失) 正常의注意를怠慢함으로因하여罪의成立要素인事實을認識하지못한行爲는法律에特別한規定이있는境遇에限하여處罰한다	제14조(결과적 가중범) 결과로 인하여 형이 무거운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第15條(事實의錯誤) ①特別히重한罪가되는事實을認識하지못한行爲는重한罪로罰하지아니한다 ②結果로因하여刑이重할罪에있어서그結果의發生을豫見할수없었을때에는重한罪로罰하지아니한다	제15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第16條(法律의錯誤) 自己의行爲가法令에依하여罪가되지아니하는것으로誤認한行爲는그誤認에正當한理由가있는때에限하여罰하지아니한다	제16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第17條(因果關係) 어떤行爲라도 罪의要素되는危險發生에連結되지아니한때에는그結果로因하여罰하지아니한다	제17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또는 당황으로 인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第18條(不作爲犯) 危險의發生을 防止할義務가있거나自己의行爲로因하여危險發生의原因을惹起한者가그危險發生을防止하지아니한때에는그發生된結果에依하여處罰한다	제18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에 대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第19條(獨立行爲의競合) 同時또는異時의獨立行爲가競合한境遇에그結果發生의原因된行爲가判明되지아니한때에는各行爲를未遂犯으로處罰한다	제19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法定節次)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第20條(正當行爲) 法令에依한行爲또는業務로因한行爲其他社會常規에違背되지아니하는行爲는罰하지아니한다	제20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第21條(正當防衛) ①自己또는他人의法益에對한現在의不當한侵害를防衛하기爲한行爲는相當한理由가있는때에는罰하지아니한다 ②防衛行爲가그程度를超過한때에는情況에依하여그刑을減輕또	제21조(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정당한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는免除할수있다 ③前項의境遇에그行爲가夜間其他不安스러운狀態下에서恐怖, 驚愕, 興奮또는唐慌으로因한때에는罰하지아니한다	
第22條(緊急避難) ①自己또는他人의法益에對한現在의危難을避하기爲한行爲는相當한理由가있는때에는罰하지아니한다 ②危難을避하지못할責任이있는者에對하여는前項의規定을適用하지아니한다 ③前條第2項과第3項의規定은本條에準用한다	제22조(정신장애) ① 정신장애로 행위의 불법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라 행위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정신장애로 제1항의 능력이 미약(微弱)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③ 스스로 정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3條(自救行爲) ①法定節次에하여請求權을保全하기不能한境遇에그請求權의實行不能또는顯著한實行困難을避하기爲한行爲는相當한理由가있는때에는罰하지아니한다 ②前項의行爲가그程度를超過한때에는情況에依하여刑을減輕또	제23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는免除할수있다	
第24條(被害者의承諾) 處分할수있는者의承諾에依하여그法益을毁損한行爲는法律에特別한規定이없는限罰하지아니한다	제24조(법률의 착오) ①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誤認)한 자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第2節 未遂犯	<삭 제>
第25條(未遂犯) ①犯罪의實行에着手하여行爲를終了하지못하였거나結果가發生하지아니한때에는未遂犯으로處罰한다 ②未遂犯의刑은旣遂犯보다減輕할수있다	제25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삽 입>	제2절 미수범
第26條(中止犯) 犯人이自意로實行에着手한行爲를中止하거나그行爲로因한結果의發生을防止한때에는刑을減輕또는免除한다	제26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

	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
第27條(不能犯) 實行의手段또는對象의錯誤로因하여結果의發生이不可能하더라도危險性이있는때에는處罰한다 但刑을減輕또는免除할수있다	제27조(중지미수) 범인이 자의(自意)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第28條(陰謀, 豫備) 犯罪의陰謀또는豫備行爲가實行의着手에이르지아니한때에는法律에特別한規定이없는限罰하지아니한다	제28조(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第29條(未遂犯의處罰) 未遂犯을處罰할罪는各本條에定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에서 정한다.
第3節 共 犯	<삭 제>
第30條(共同正犯) 2人以上이共同하여罪를犯한때에는各自를그罪의正犯으로處罰한다	제30조(예비, 음모) 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삽 입>	제3절 정범과 공범
第31條(敎唆犯) ①他人을敎唆하여罪를犯하게한者는罪를實行한者와同一한刑으로處罰한다 ②敎唆를받은者가犯罪의實行을承諾하고實行의着手에이르지아니한때에는敎唆者와被敎唆者를陰謀또는豫備에準하여處罰한다 ③敎唆를받은者가犯罪의實行을承諾하지아니한때에도敎唆者에對하여는前項과같다	제31조(정범) ①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 ②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
第32條(從犯) ①他人의犯罪를幇助한者는從犯으로處罰한다 ②從犯의刑은正犯의刑보다減輕한다	제32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第33條(共犯과身分) 身分關係로因하여成立될犯罪에加功한行爲는身分關係가없는者에게도前3條의規定을適用한다 但身分關係로因하여刑의輕重이있는境遇에는重한刑으로罰하지아니한다	제33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敎唆)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사자는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第34條(間接正犯, 特殊한敎唆, 幇助에對한刑의加重) ①어느行爲로因하여處罰되지아니하는者또는過失犯으로處罰되는者를敎唆또는幇助하여犯罪行爲의結果를發生하게한者는敎唆또는幇助의例에依하여處罰한다 ②自己의指揮, 監督을받는者를敎唆또는幇助하여前項의結果를發生하게한者는敎唆인때에는正犯에定한刑의長期또는多額에그2分의1까지加重하고幇助인때에는正犯의刑으로處罰한다	제34조(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幇助)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第4節 累 犯	<삭 제>
第35條(累犯) ①禁錮以上의刑을받어그執行을終了하거나免除를받은後3年內에禁錮以上에該當하는罪를犯한者는累犯으로處罰한다	제35조(공범과 신분) ① 신분에 의하여 구성되는 범죄에 그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분이

②累犯의刑은그罪에定한刑의長期의2倍까지加重한다	없는 자의 형은 감경할 수 있다. ② 신분에 의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되거나 감경되지 아니한 형으로 처벌한다.
<삽 입>	제4절 경합범
第36條(判決宣告後의累犯發覺) 判決宣告後累犯인것이發覺된때에는그宣告한刑을通算하여다시刑을定할수있다 但宣告한刑의執行을終了하거나그執行이免除된後에는例外로한다	제36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한다.
第5節 競合犯	<삭 제>
第37條(競合犯) 判決이確定되지아니한數個의罪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그判決確定前에犯한罪를競合犯으로한다.	제37조(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서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장기(長期)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하한이 다른 죄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다른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그 형의 하한으로 한다. 3. 각 죄에서 정한 형이 무기징역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병과한다.
第38條(競合犯과處罰例) ①競合犯을同時에判決할때에는다음의區別에依하여處罰한다 1. 가장重한罪에定한刑이死刑또는無期懲役이나無期禁錮인때에는가장重한罪에定한刑으로處罰한다 2. 各罪에定한刑이死刑또는無	제38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여러 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期懲役이나無期禁錮以外의同種의刑인때에는가장重한罪에定한長期또는多額에그2分의1까지加重하되各罪에定한刑의長期또는多額을合算한刑期또는額數를超過할수없다 但科料와科料, 沒收와沒收는併科할수있다 3. 各罪에定한刑이無期懲役이나無期禁錮以外의異種의刑인때에는併科한다 ②前項各號의境遇에있어서懲役과禁錮는同種의刑으로看做하여懲役刑으로處罰한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을 집행할 때에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通算)한다.
第39條(判決을받지아니한競合犯, 數個의判決과競合犯, 刑의執行과競合犯) ①競合犯中判決을받지아니한罪가있는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競合犯에依한判決의宣告를받	제39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은者가競合犯中의어떤罪에對하여赦免또는刑의執行이免除된때에는다른罪에對하여다시刑을定한다 ④前3項의刑의執行에있어서는이미執行한刑期를通算한다	
<삽 입>	제3장 형
<삽 입>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第40條(想像的競合) 1個의行爲가數個의罪에該當하는境遇에는가장重한罪에定한刑으로處罰한다	제40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2. 징역 3. 벌금 4. 구류
第3章 刑	<삭 제>
第1節 刑의種類와輕重	<삭 제>
第41條(刑의種類) 刑의種類는다음과같다 1. 死 刑	제41조(징역의 기간) ① 징역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2. 懲　役 3. 禁　錮 4. 資格喪失 5. 資格停止 6. 罰　金 7. 拘留 8. 科料 9. 沒收	②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 그 장기는 50년까지로 한다.
第42條(懲役또는禁錮의期間)　懲役또는禁錮는無期또는有期로하고有期는 1개월 以上 30년 以下로한다　但有期懲役또는有期禁錮에對하여刑을加重하는때에는 50년까지로한다.	제42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지배인, 그 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정지된다.

第43條(刑의宣告와資格喪失, 資格停止) ①死刑, 無期懲役또는無期禁錮의判決을받은者는다음에記載한資格을喪失한다 1. 公務員이되는資格 2. 公法上의選擧權과被選擧權 3. 法律로要件을定한公法上의業務에關한資格 4. 法人의理事, 監事또는支配人其他法人의業務에關한檢査役이나財産管理人이되는資格 ②有期懲役또는有期禁錮의判決을받은者는그刑의執行이終了하거나免除될때까지前項第1號乃至第3號에記載된資格이停止된다	제43조(벌금)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第44條(資格停止) ①前條에記載한資格의全部또는一部에對한停止는1年以上15年以下로한다 ②有期懲役또는有期禁錮에資格停止를併科한때에는懲役또는禁錮의執行을終了하거나免除된날로부터停止期間을起算한다	제44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第45條(罰金) 罰金은 5萬원以上으로한다. 다만, 減輕하는 경우	제45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에는 5萬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죄질과 범정(犯情)에 따라 경중을 정한다.
<삽 입>	제2절 형의 양정
第46條(拘留) 拘留는1日以上30日未滿으로한다	제46조(양형의 원칙) ① 형은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품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과 결과 4. 범행 후 범인의 태도와 정황 5. 형의 부과에 따른 장래의 범

	죄 예방 및 범인의 재사회화 ③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第47條(科料) 科料는 2千원以上 5萬원미만으로한다.	제47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 고소권자, 고발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第48條(沒收의對象과追徵) ①犯人以外의者의所有에屬하지아니하거나犯罪後犯人以外의者가情을알면서取得한다음記載의物件은全部또는一部를沒收할수있다 1. 犯罪行爲에提供하였거나提供하려고한物件 2. 犯罪行爲로因하여生하였거나이로因하여取得한物件 3. 前2號의對價로取得한物件	제48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형을 감경하는 경우: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2.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3. 유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②前項에記載한物件을沒收하기不能한때에는그價額을追徵한다 ③文書, 圖畵,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 또는 有價證券의一部가沒收에該當하는때에는그部分을廢棄한다.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5. 구류를 감경하는 경우: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第49條(沒收의附加性) 沒收는他刑에附加하여科한다 但行爲者에게有罪의裁判을아니할때에도沒收의要件이있는때에는沒收만을宣告할수있다	제49조(정상감경) ①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여러 개 있더라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 1.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4.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② 정상감경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항을 준용한다.

第50條(刑의輕重) ①刑의輕重은 第41條記載의順序에依한다 但 無期禁錮와有期懲役은禁錮를重 한것으로하고有期禁錮의長期가 有期懲役의長期를超過하는때에 는禁錮를重한것으로한다 ②同種의刑은長期의긴것과多額 의많은것을重한것으로하고長期 또는多額이同一한때에는그短期 의긴것과少額의많은것을重한것 으로한다 ③前2項의規定에依한外에는罪 質과犯情에依하여輕重을定한다	제50조(선택형과 정상감경) 1개 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 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第2節 刑의量定	<삭 제>
第51條(量刑의條件) 刑을定함에 있어서는다음事項을參酌하여야 한다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2. 被害者에對한關係 3. 犯行의動機, 手段과結果 4. 犯行後의情況	제51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가중·감경한다. 1. 각칙 조항에 따른 가중 2. 법률상의 감경 3. 경합범 가중 4. 정상감경
第52條(自首, 自服) ①罪를犯한	제52조(미결구금일수의 통산) ①

後搜査責任이있는官署에自首한때에는그刑을減輕또는免除할수있다 ②被害者의意思에反하여處罰할수없는罪에있어서被害者에게自服한때에도前項과같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이하 “미결구금일수”라 한다)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벌금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입 시 미결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벌금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第53條(酌量減輕) 犯罪의情狀에參酌할만한事由가있는때에는酌量하여그刑을減輕할수있다	제53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삽 입>	제3절 형의 선고유예
第54條(選擇刑과酌量減輕) 1個의罪에定한刑이數種인때에는먼저適用할刑을定하고그刑을減輕한다	제54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

	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징역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第55條(法律上의減輕) ①法律上의減輕은다음과같다. 1. 死刑을減輕할때에는無期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懲役또는禁錮로한다 2. 無期懲役또는無期禁錮를減輕할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懲役또는禁錮로한다 3. 有期懲役또는有期禁錮를減輕할때에는그刑期의2分의1로한다 4. 資格喪失을減輕할때에는7年以上의資格停止로한다 5. 資格停止를減輕할때에는그刑期의2分의1로한다 6. 罰金을減輕할때에는그多額의2分의1로한다 7. 拘留를減輕할때에는그長期	제55조(선고유예의 조건)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와 원호(援護)가 필요할 때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선고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

의2分의1로한다 8. 科料를減輕할때에는그多額의2分의1로한다 ②法律上減輕할事由가數個있는때에는거듭減輕할수있다	
第56條(加重減輕의順序) 刑을加重減輕할事由가競合된때에는다음順序에依한다 1. 各則本條에依한加重 2. 第34條第2項의加重 3. 累犯加重 4. 法律上減輕 5. 競合犯加重 6. 酌量減輕	제56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第57條(判決宣告前拘禁日數의通算) ①判決宣告前의拘禁日數는그全部또는一部를有期懲役, 有期禁錮, 罰金이나科料에關한留置또는拘留에算入한다 ②前項의境遇에는拘禁日數의1日은懲役, 禁錮, 罰金이나科料에關한留置또는拘留의期間의1	제57조(선고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그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하고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된 것으로 본다.

日로計算한다	
<삽 입>	제4절 형의 집행유예
第58條(判決의公示) ①被害者의 利益을爲하여必要하다고認定할 때에는被害者의請求가있는境遇에限하여被告人의負擔으로判決公示의趣旨를宣告할수있다 ②被告事件에對하여無罪또는免訴의判決을宣告할때에는判決公示의趣旨를宣告할수있다	제58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특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第3節 刑의宣告猶豫	<삭 제>
第59條(宣告猶豫의要件) ①1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 資格停止또는罰金의刑을宣告할境遇에第51條의事項을參酌하여改悛의情狀이顯著한때에는그宣告를猶豫할수있다 但資格停止以上의刑을받은前科가있는者에對하여는例外로한다 ②刑을併科할境遇에도刑의全部또는一部에對하여그宣告를猶豫할수있다	제59조(집행유예의 조건)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치료 또는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한다.
第59條의2(保護觀察) ①刑의 宣告를 猶豫하는 경우에 再犯防止를 위하여 指導 및 援護가 필요한 때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1年으로 한다.	<삭 제>

第60條(宣告猶豫의效果) 刑의宣告猶豫를받은날로부터2年을經過한때에는免訴된것으로看做한다	제60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第61條(宣告猶豫의失效) ①刑의宣告猶豫를받은者가猶豫期間中資格停止以上의刑에處한判決이確定되거나資格停止以上의刑에處한前科가發見된때에는猶豫한刑을宣告한다 ②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한 宣告猶豫를 받은 者가 保護觀察期間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猶豫한 刑을 宣告할 수 있다.	제61조(집행유예의 취소와 조건의 추가·변경)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또는 피해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第4節 刑의執行猶豫	<삭 제>
第62條(執行猶豫의要件) ①3年以下의懲役또는禁錮의刑을宣告할境遇에第51條의事項을參酌하여그情狀에參酌할만한事由가있는	제62조(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때에는1年以上5年以下의期間刑의執行을猶豫할수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刑을併科할境遇에는그刑의一部에對하여執行을猶豫할수있다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삽 입>	제5절 형의 집행
第62條의2(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命令) ①刑의 執行을 猶豫하는 경우에는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의 기간은 執行을 猶豫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法院은 猶豫期間의 범위내에서 保護觀察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執行猶豫期間내에 이를 執行	<삭 제>

한다.	
第63條(執行猶豫의失效) 執行猶豫의宣告를받은者가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判決이確定된때에는執行猶豫의宣告는效力을잃는다.	제63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第64條(執行猶豫의取消) ①執行猶豫의宣告를받은後第62條但行의事由가發覺된때에는執行猶豫의宣告를取消한다 ②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이나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한 執行猶豫를 받은 者가 준수사항이나 命令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를 取消할 수 있다.	제64조(징역과 구류)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필요한 경우 교정처우를 행한다. ② 구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第65條(執行猶豫의效果) 執行猶豫의宣告를받은後그宣告의失效또는取消됨이없이猶豫期間을經過한때에는刑의宣告는效力을잃는다	제65조(벌금의 납입)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完納)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하게 한다.
第5節 刑의執行	<삭 제>
第66條(死刑) 死刑은刑務所內에서絞首하여執行한다	제66조(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第67條(懲役) 懲役은刑務所內에拘置하여定役에服務하게한다	제67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한다.
<삽 입>	제6절 가석방
第68條(禁錮와拘留) 禁錮와拘留는刑務所에拘置한다	제68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벌금이 병과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第69條(罰金과科料) ①罰金과科料는判決確定日로부터30日內에納入하여야한다 但罰金을宣告할때에는同時에그金額을完納할때까지勞役場에留置할것을命할수있다 ②罰金을納入하지아니한者는1日以上3年以下, 科料를納入하지아니한者는1日以上30日未滿의期間勞役場에留置하여作業에服務하게한다	제69조(미결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가석방하는 경우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병과된 벌금을 납입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第70條(勞役場留置) 罰金또는科料를宣告할때에는納入하지아니하는境遇의留置期間을定하여同時에宣告하여야한다	제70조(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은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1條(留置日數의控除) 罰金또는科料의宣告를받은者가그一部를納入한때에는罰金또는科料額과留置期間의日數에比例하여納入金額에相當한日數를除한다	제71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6節 假釋放	<삭 제>
第72條(假釋放의要件) ①懲役또는禁錮의執行中에있는者가그行狀이良好하여改悛의情이顯著한때에는無期에있어서는 20년, 有期에있어서는刑期의3分의1을經過한後行政處分으로假釋放을할수있다. ②前項의境遇에罰金또는科料의併科가있는때에는그金額을完納하여야한다	제72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73條(判決宣告前拘禁과假釋放) ①刑期에算入된判決宣告前拘禁의日數는假釋放에있어서執行을經過한期間에算入한다 ②罰金또는科料에關한留置期間	제73조(가석방기간 경과의 효과)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

에算入된判決宣告前拘禁日數는 前條第2項의境遇에있어서그에 該當하는金額이納入된것으로看做한다	로 본다.
<삽 입>	제7절 형의 시효
第73條의2(假釋放의 기간 및 保護觀察) ①假釋放의 기간은 無期刑에 있어서는 10年으로 하고, 有期刑에 있어서는 남은 刑期로 하되, 그 기간은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假釋放된 者는 假釋放期間중 保護觀察을 받는다. 다만, 假釋放을 許可한 行政官廳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第74條(假釋放의失效) 假釋放中 禁錮以上의刑의宣告를받어그判決이確定된때에는假釋放處分은 效力을잃는다 但過失로因한罪로刑의宣告를받었을때에는例外로한다	제74조(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을 면제한다.
第75條(假釋放의 取消) 假釋放의	제75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처분을 받은 者가 監視에 관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징역: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 5년 6. 벌금: 3년 7. 구류: 1년
第76條(假釋放의效果) ①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失效 또는 取消되지 아니하고 假釋放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前2條의境遇에는假釋放中의日數는刑期에算入하지아니한다	제76조(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가석방,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을 집행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第7節 刑의時效	<삭 제>
第77條(時效의效果) 刑의宣告를받은者는時效의完成으로因하여그執行이免除된다	제77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경우에, 벌금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경

	우에 중단된다.
<삽 입>	제8절 형의 실효
第78條(時效의期間) 時效는刑을宣告하는裁判이確定된後그執行을받음이없이다음의期間을經過함으로因하여完成된다 1. 死刑은30年 2. 無期의懲役또는禁錮는20年 3. 10年以上의懲役또는禁錮는15年 4. 3年以上의懲役이나禁錮또는10年以上의資格停止는10年 5. 3年未滿의懲役이나禁錮또는5年以上의資格停止는5年 6. 5年未滿의資格停止, 罰金, 沒收또는追徵은3年 7. 拘留또는科料는1年	제78조(형의 실효) ① 형의 선고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징역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구류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 효력을 잃는다. 1. 3년을 넘는 징역: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5년 3. 벌금: 2년 ② 징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였을 것 2. 피해배상이나 그 밖에 정상

	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3.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삽 입>	제9절 몰수
第79條(時效의停止) 時效는刑의執行의猶豫나停止또는假釋放其他執行할수없는期間은進行되지아니한다	제79조(몰수의 대상) ① 범인이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것 3.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것 4.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것 ②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第80條(時效의中斷) 時效는死刑,	제80조(추징과 폐기) ① 제79조에

懲役, 禁錮와拘留에있어서는受刑者를逮捕함으로, 罰金, 科料, 沒收와追徵에있어서는强制處分을開始함으로因하여中斷된다	따라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를 몰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第8節 刑의消滅	<삭 제>
第81條(刑의失效) 懲役또는禁錮의執行을終了하거나執行이免除된者가被害者의損害를補償하고資格停止以上의刑을받음이없이7年을經過한때에는本人또는檢事의申請에依하여그裁判의失效를宣告할수있다	제81조(몰수 등의 특례) 제79조에 따른 몰수(제80조제2항에 따른 일부 몰수를 포함한다)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추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
第82條(復權) 資格停止의宣告를받은者가被害者의損害를補償하고資格停止以上의刑을받음이없이停止期間의2分의1을經過한때에는本人또는檢事의申請에依하여資格의回復을宣告할수있다	제82조(몰수·추징의 시효) ①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는 강

	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된다.
第4章 期 間	제4장 보안처분
第83條(期間의 計算) 年또는月로써定한期間은曆數에따라計算한다	제83조(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수용 2. 치료수용 3. 보호관찰
<신 설>	제83조의2(비례성의 원칙) 보안처분은 행위자가 범한 죄, 행위자가 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죄의 중요성 및 행위자가 야기할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지 아니하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83조의3(보호수용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한다. 1. 다음 각 목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5년 이

	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다음 각 목의 죄를 고의로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가.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4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 제1호 각 목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실형을 선고받은 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자가 그 수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안에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죄를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실형”이란 징역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죄”란 전후의 범죄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상호간 나.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의 죄 상호간 다.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 상호간 라.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및 제294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상호간 마.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상호간 바.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42조(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상호간 2.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상호간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형기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형기는 선고형으로 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감형한 경우에는 최초로 감형된 형기로 한다. 2.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그 죄에서 정한 형이 가장 무거운 경우에는 선고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하되, 제1항제1호 각 목의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초과할 수 없다. 3.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단기를 형기로 한다.
<신 설>		제83조의4(보호수용의 내용) ① 보호수용은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근로는 피보호수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부과한다. ② 보호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83조의5(보호수용의 집행유예) ① 보호수용을 선고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6개월 전에 뉘우치는 빛,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호수용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로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신 설>	제83조의6(보호수용 집행유예의 실효) 제83조의5제1항에 따라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제83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호수용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 설>	제83조의7(보호수용 집행유예의 취소) 제83조의5에 따라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제83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라 개시

	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83조의8(보호수용 집행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보호수용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보호수용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신 설>	제83조의9(치료수용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치료수용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치료수용을 선고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정신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질 또는 알코올을 식음, 흡입, 흡연 또는 주입하는 습성

		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그 습성이나 중독과 관련하여 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가.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신 설>		제83조의10(치료수용의 내용) ① 치료수용은 치료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제83조의9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치료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제83조의9제2호에 따른 치료수용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83조의11(치료위탁)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이나 친족, 그 밖에 친족을 대신하여 피치료수용자를 보호·치료할 수 있는 자에게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1. 치료수용만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시작된 후 1년 2. 치료수용과 형이 병과된 경우: 형기에 상당하는 치료수용기간
<신 설>	제83조의12(가출소·가종료) ①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수용성적 또는 치료경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호수용의 가출소 또는 치료수용의 가종료를 할 수 있다. ②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가출소 여부는 집행개시 후 1년마다 심사하여야 하고,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한 가종료 여부는 집행

	개시 후 6개월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③ 보호수용 집행개시 후 1년 또는 치료수용 집행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수용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신청에 의하여 가출소 또는 가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수용이 선고된 수형자가 가석방된 후 그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형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가출소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⑤ 가출소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 면제 여부는 가출소 또는 가종료 후 6개월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3조의13(치료위탁·가출소·가종료의 취소) ① 치료위탁·가출소·가종료된 자가 고의로 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제83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개시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치료위탁·가출소·가종료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치료위탁·가출소·가종료의 일수는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3조의14(보호수용과 치료수용의 경합) 제83조의3에 따른 보호수용의 요건과 제83조의9에 따른 치료수용의 요건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치료수용만을 선고한다.
<신 설>	제83조의15(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 선고의 특례) ①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은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나 공소제기 없이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용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신 설>		제83조의16(수용의 집행순서 및 방법) ① 형의 선고와 보호수용의 선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② 형의 선고와 치료수용의 선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치료수용을 먼저 집행한다. ③ 여러 개의 보호수용 선고 또는 여러 개의 치료수용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선고한 수용만을 집행한다. 다만, 제83조의9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치료수용 선고와 제83조의9제2호에 따른 치료수용 선고 중 제83조의9제2호에 따른 치료수용이 후에 선고된 경우에는 제83조의9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치료

		수용을 집행한다. ④ 보호수용의 선고와 치료수용의 선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치료수용을 먼저 집행한다. ⑤ 형과 동시에 선고된 치료수용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신 설>	제83조의17(수용의 선고와 자격정지)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을 선고받은 자는 그 수용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정지된다.
	<신 설>	제83조의18(수용의 시효) ①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을 면제한다. ② 시효는 수용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1. 보호수용 및 제83조의9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치료수용: 10

		년 2. 제83조의9제2호에 따른 치료수용: 7년 ③ 시효는 보호수용의 집행정지 또는 가출소, 치료수용의 집행정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④ 시효는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을 선고받은 자를 그 집행을 위하여 체포한 경우에 중단된다.
<신 설>		제83조의19(보호관찰의 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가출소하는 경우 2.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3. 치료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되는 경우 4. 가출소되거나 가종료되지 아

		니하고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 ② 제83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고의로 범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83조의20(보호관찰의 내용) ① 보호관찰은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지도·감독 및 원호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제83조의19에 따라 보호관찰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제83조의21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83조의21(보호관찰의 기간) ① 제83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

	례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83조의19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그 집행유예기간으로 한다. ③ 제83조의19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제83조의9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치료수용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83조의19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신 설>	제83조의22(보호관찰 집행의 면제) 제83조의19제1항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보호관찰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83조의23(가출소·가종료·치

	료위탁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경과의 효과) 제83조의19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이 면제된다.
<신 설>	제83조의24(보호관찰의 종료) 제83조의19에 따른 보호관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된다. 1. 제83조의12제5항에 따라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2.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3. 가출소·가종료·치료위탁이 취소되어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4. 보호관찰 기간 중의 새로운 범죄로 보호수용 또는 치료수용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 설>	제83조의25(보안처분의 집행 등) 제83조의12제5항에 따른 집행면제의 사유, 보호수용 또는 치

	료수용의 집행정지 요건 등 보안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삽 입>	제5장 기간
第84條(刑期의起算) ①刑期는判決이確定된날로부터起算한다 ②懲役, 禁錮, 拘留와留置에있어서는拘束되지아니한日數는刑期에算入하지아니한다	제84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한다.
第85條(刑의執行과時效期間의初日) 刑의執行과時效期間의初日은時間을計算함이없이1日로算定한다	제85조(형기의 기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② 징역, 구류, 유치의 경우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86條(釋放日) 釋放은刑期終了日에하여야한다	제86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첫날)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첫날은 시간 계산 없이 1일로 한다.
<신 설>	제86조의2(석방일) 형기만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第87條(內亂) 國土를僭竊하거나	第87條(內亂) ----------

國憲을紊亂할目的으로暴動한者는다음의區別에依하여處斷한다	---------- ----------
1. 首魁는死刑, 無期懲役또는無期禁錮에處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謀議에參與하거나指揮하거나其他重要한任務에從事한者는死刑, 無期또는5年以上의懲役이나禁錮에處한다 殺傷, 破壞또는掠奪의行爲를實行한者도같다	2. ---------- ----------징역---------- ------- ------
3. 附和隨行하거나單純히暴動에만關與한者는5年以下의懲役또는禁錮에處한다	3. ----------징역----------
第88條(內亂目的의殺人) 國土를僭竊하거나國憲을紊亂할目的으로사람을殺害한者는死刑, 無期懲役또는無期禁錮에處한다	第88條(內亂目的의殺人) ------- ---------- 무기징역----------
第90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87條또는第88條의罪를犯할目的으로豫備또는陰謀한者는3年以上의有期懲役이나有期禁錮에處한다 但그目的한罪의實行에이르기前에自首한때에는그刑을減輕또는免除한다	第90條(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 --------유기징역---------- -------- ----------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第105條(國旗, 國章의冒瀆) 大韓民國을侮辱할目的으로國旗또는國章을損傷, 除去또는汚辱한者는5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 10年以下의資格停止또는 7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105條(國旗, 國章의冒瀆) ----------징역----------.
第106條(國旗, 國章의 誹謗) 前條의目的으로國旗또는國章을 誹謗한 者는1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 5年以下의資格停止또는 200萬원 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106條(國旗, 國章의 誹謗) ----------징역----------.
第107條(外國元首에對한暴行等) ①大韓民國에滯在하는外國의元首에對하여暴行또는脅迫을加한者는7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에處한다	第107條(外國元首에對한暴行等) ①----------징역----------
②前項의外國元首에對하여侮辱을加하거나名譽를毁損한者는5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에處한다	②----------징역----------
第108條(外國使節에對한暴行等) ①大韓民國에派遣된外國使節에對하여暴行또는脅迫을加한者는5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에處한다	第108條(外國使節에對한暴行等) ①----------징역----------
②前項의外國使節에對하여侮辱	②----------

을加하거나名譽를毁損한者는3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에處한다	----------징역----------
第109條(外國의國旗, 國章의冒瀆) 外國을侮辱할目的으로그나라의公用에供하는國旗또는國章을損傷, 除去또는汚辱한者는2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 300萬원 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109條(外國의國旗, 國章의冒瀆) ----------징역----------.
第111條(外國에對한私戰) ①外國에對하여私戰한者는1年以上의有期禁錮에處한다 ②(생 략) ③第1項의罪를犯할目的으로豫備또는陰謀한者는3年以下의禁錮또는 500萬원 以下의罰金에處한다 但그目的한罪의實行에이르기前에自首한때에는減輕또는免除한다.	第111條(外國에對한私戰) ①----------유기징역-------- ②(현행과 같음) ③----------징역---------- ---------- ----------.
第112條(中立命令違反) 外國間의交戰에있어서中立에關한命令에違反한者는3年以下의禁錮또는500萬원 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112條(中立命令違反) ----------징역----------.
第114條(犯罪團體의組織) ①(생략)	第114條(犯罪團體의組織) ①(현행과 같음)

②兵役또는納稅의義務를拒否할目的으로團體를組織하거나이에加入한者는10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罰金에處한다.	②----------징역----------.
③前2項의罪를犯하여有期의懲役이나禁錮또는罰金에處한者에對하여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삭 제>
第115條(騷擾) 多衆이集合하여暴行, 脅迫또는損壞의行爲를한者는1年以上10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1千5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115條(騷擾) ----------징역----------
第116條(多衆不解散) 暴行, 脅迫또는損壞의行爲를할目的으로多衆이集合하여그를團束할權限이있는公務員으로부터3回以上의解散命令을받고解散하지아니한者는2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3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116條(多衆不解散) ----------징역----------
第122條(職務遺棄) 公務員이正當한理由없이그職務遂行을拒否하거나그職務를遺棄한때에는1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3年以	第122條(職務遺棄) ------징역----------

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
第123條(職權濫用) 公務員이職權을濫用하여사람으로하여금義務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權利行使를妨害한때에는5年以下의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23條(職權濫用) ---------- 징역 ---------- --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裁判, 檢察, 警察其他人身拘束에關한職務를行하는者또는이를補助하는者가그職權을濫用하여사람을逮捕또는監禁한때에는7年以下의懲役과10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징역----------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第125條(暴行, 苛酷行爲) 裁判, 檢察, 警察其他人身拘束에關한職務를行하는者또는이를補助하는者가그職務를行함에當하여刑事被疑者또는其他사람에對하여暴行또는苛酷한行爲를加한때에는5年以下의懲役과10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第125條(暴行, 苛酷行爲) ---------- 징역---------- ----------
第126條(被疑事實公表) 檢察, 警	第126條(被疑事實公表) --------

察其他犯罪搜査에關한職務를行하는者또는이를監督하거나補助하는자가그職務를行함에當하여知得한被疑事實을公判請求前에公表한때에는3年以下의懲役또는5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징역----------
第127條(公務上秘密의漏泄) 公務員또는公務員이었던者가法令에依한職務上秘密을漏泄한때에는2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5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第127條(公務上秘密의漏泄) ----------징역----------
第128條(選擧妨害) 檢察, 警察또는軍의職에있는公務員이法令에依한選擧에關하여選擧人, 立候補者또는立候補者되려는者에게脅迫을加하거나其他方法으로選擧의自由를妨害한때에는10年以下의懲役과5年以上의資格停止에處한다	第128條(選擧妨害) ----------징역----------
第129條(收賂, 事前收賂) ①公務員또는仲裁人이그職務에關하여賂物을收受, 要求또는約束한때에는5年以下의懲役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第129條(收賂, 事前收賂) ①----------징역----------
②公務員또는仲裁人이될者가그	②----------

擔當할職務에關하여請託을받고賂物을收受, 要求또는約束한後公務員또는仲裁人이된때에는3年以下의懲役또는7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징역----------
第130條(第三者賂物提供) 公務員또는仲裁人이그職務에關하여不正한請託을받고第3者에게賂物을供與하게하거나供與를要求또는約束한때에는5年以下의懲役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第130條(第三者賂物提供) ----------징역----------
第131條(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①·② (생 략)	第131條(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①·② (현행과 같음)
③公務員또는仲裁人이었던者가그在職中에請託을받고職務上不正한行爲를한後賂物을收受, 要求또는約束한때에는5年以下의懲役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③----------징역----------
④前3項의境遇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삭 제>
第132條(斡旋收賂) 公務員이그地位를利用하여다른公務員의職務에屬한事項의斡旋에關하여賂物	第132條(斡旋收賂) ----------

을收受, 要求또는約束한때에는 3年以下의懲役또는7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징역----------
第136條(公務執行妨害) ① (생략)	第136條(公務執行妨害) ①(현행과 같음)
②公務員에對하여그職務上의行爲를强要또는阻止하거나그職을辭退하게할目的으로暴行또는脅迫한者도前項의刑과같다	②----------저지하거나----------
第139條(人權擁護職務妨害) 警察의職務를行하는者또는이를補助하는者가人權擁護에關한檢事의職務執行을妨害하거나그命令을遵守하지아니한때에는5年以下의懲役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第139條(人權擁護職務妨害) ----------징역----------
第171條(業務上失火, 重失火) 業務上過失또는重大한過失로因하여 第170條의 罪를犯한者는3年以下의禁錮또는 2千萬원 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171條(業務上失火, 重失火) ----------징역----------.
第173條의2(過失爆發性物件破裂등) ①過失로 第172條第1項, 第172條의2第1項, 第173條第1項과 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第173條의2(過失爆發性物件破裂등) ①----------

이하의 禁錮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징역 ---------- ----------. ②---------- ---------- ------ 징역 ---------- ----------.
第189條(過失, 業務上過失, 重過失) ①(생 략) ②業務上過失또는重大한過失로因하여第185條乃至第187條의罪를犯한者는3年以下의禁錮또는2千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189條(過失, 業務上過失, 重過失) ①(현행과 같음) ②---------- ----------징역----------
第203條(常習犯) 常習으로前5條의罪를犯한때에는各條에定한刑의2分의1까지加重한다	<삭 제>
第204條(資格停止또는罰金의併科) 第198條 내지 第203條의境遇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또는2千萬원以下의罰金을併科할수있다	제204조(벌금의 병과) 제198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第209條(資格停止또는罰金의併科) 第207條 또는 第208條의罪를犯하여有期懲役에處할境遇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또는2千萬원以下의罰金을併科할수있다	第209條(벌금의 병과) --------- ---------- --2천만원----------

第220條(資格停止 또는 罰金의 併科) 第214條 내지 第219條의 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하는 경우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	第220條(벌금의 병과) ---------- ---------- ---------- ---- 2천만원---------- ---------- --------.
第230條(公文書等의不正行使) 公務員또는公務所의文書또는圖畵를不正行使한者는2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5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230條(公文書等의不正行使) -- ----------징역---------- ----------
第233條(虛僞診斷書등의 作成) 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또는 助産師가 診斷書, 檢案書 또는 生死에 관한 證明書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7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3條(虛僞診斷書등의 作成) - ---------- ---------- ---------- ---------- 징역 ---------- ---------- ----.
第236條(私文書의不正行使) 權利·義務또는事實證明에關한他人의文書또는圖畵를不正行使한者는1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3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236條(私文書의不正行使) ---- ---------- ---------- ----------징역---------- ----------
第237條(資格停止의併科) 第225	<삭 제>

條乃至第227條의2 및 그 行使罪를 犯하여 懲役에 處할 경우에는 10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第238條(公印等의僞造, 不正使用) ①·② (생 략) ③前2項의境遇에는7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第238條(公印等의僞造, 不正使用)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第245條(公然淫亂) 公然히淫亂한行爲를한者는1年以下의懲役, 500萬원以下의罰金, 拘留또는科料에處한다	第245條(公然淫亂) ----------벌금 또는 구류----------
第246條(賭博, 常習賭博) ①財物로써賭博한者는500萬원以下의罰金또는科料에處한다 但一時娛樂程度에不過한때에는例外로한다 ② (생 략)	第246條(賭博, 常習賭博) ①---------- 벌금---------- ---------- ② (현행과 같음)
第248條(福票의發賣等) ①·② (생 략) ③第1項의福票를取得한者는500萬원以下의罰金또는科料에處한다	第248條(福票의發賣等)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벌금----------
第256條(資格停止의併科) 第250	<삭 제>

條, 第252條또는第253條의境遇에有期懲役에處할때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①사람의身體를傷害한者는7年以下의懲役, 10年以下의資格停止또는1千萬원以下의罰金에 處한다 ②·③(생 략)	第257條(傷害, 尊屬傷害) ①----------징역 ---------- ②·③(현행과 같음)
第260條(暴行, 尊屬暴行) ①사람의身體에對하여暴行을加한者는2年以下의懲役, 500萬원以下의罰金, 拘留또는科料에處한다 ②·③(생 략)	第260條(暴行, 尊屬暴行) ①----------벌금 또는 구류---------- ②·③(현행과 같음)
第264條(常習犯) 常習으로第257條, 第258條, 第260條또는第261條의罪를犯한때에는그罪에定한刑의2分의1까지加重한다	<삭 제>
第265條(資格停止의併科) 第257條第2項, 第258條, 第260條第2項, 第261條또는前條의境遇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삭 제>
第266條(過失致傷) ①過失로因하여사람의身體를傷害에 이르게	第266條(過失致傷) ①----------

한 者는500萬원以下의 罰金, 拘留또는科料에處한다	---------- 벌금 또는 구류----------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第267條(過失致死) 過失로因하여 사람을死亡에 이르게 한 者는2年以下의禁錮또는7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267條(過失致死) ----------징역----------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致死傷) 業務上過失또는重大한過失로因하여사람을死傷에이르게한者는5年以下의禁錮또는2千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致死傷) ----------징역----------
第270條(醫師等의落胎, 不同意落胎)① ~ ③(생 략)	第270條(醫師等의落胎, 不同意落胎)① ~ ③(현행과 같음)
④前3項의境遇에는7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한다	<삭 제>
第279條(常習犯) 常習으로第276條또는第277條의罪를犯한때에는前條의例에依한다	<삭 제>
第280條(未遂犯) 前4條의未遂犯은處罰한다	第280條(未遂犯) 제276조부터 제278조까지--
第281條(逮捕·監禁등의 致死傷) ①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第281條(逮捕·監禁등의 致死傷) ①제276조부터 제278조까지 및 제280조----------

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
②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대하여 第276條 내지 第280條의 罪를 犯하여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 제276조부터 제278조까지 및 제280조----------. ----------.
第282條(資格停止의併科) 本章의 罪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삭 제>
第283條(脅迫, 尊屬脅迫) ①사람을脅迫한者는3年以下의懲役, 500萬원以下의罰金, 拘留또는科料에處한다	第283條(脅迫, 尊屬脅迫) ①----------벌금 또는 구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285條(常習犯) 常習으로第283條第1項, 第2項또는前條의罪를犯한때에는그罪에定한刑의2分의1까지加重한다	<삭 제>
第286條(未遂犯) 前3條의未遂犯은處罰한다	第286條(未遂犯) 제283조 및 제284조--------

第288條(營利等을爲한略取, 誘引, 賣買等) ①·② (생 략)	第288條(營利等을爲한略取, 誘引, 賣買等) ①·② (현행과 같음)
③常習으로前2項의罪를犯한者는2年以上의有期懲役에處한다	<삭 제>
第289條(國外移送을爲한略取, 誘引, 賣買) ①·② (생 략)	第289條(國外移送을爲한略取, 誘引, 賣買) ①·② (현행과 같음)
③常習으로前2項의罪를犯한者는5年以上의有期懲役에處한다	<삭 제>
第293條(常習犯) ①常習으로前條의罪를犯한者는2年以上10年以下의懲役에處한다 ②醜行, 姦淫또는營利의目的으로前條의罪를犯한者도前項의刑과같다	제293조(영리 등을 위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제292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295條(資格停止또는罰金의併科) 第288條, 第289條, 第292條, 第293條와그未遂犯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또는2千萬원以下의罰金을併科할수있다	第295條(벌금의 병과) ----------2천만원----------
第296條(告訴) 第288條第1項, 第292條第1項또는第293條第2項의各罪中醜行또는姦淫의目的으로略取, 誘引, 收受또는隱匿한	第296條(告訴) ----------제293조----------

罪, 第291條의罪와그未遂犯은 告訴가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第304條(婚姻憑藉等에依한姦淫) 婚姻을憑藉하거나其他僞計로써 淫行의常習없는婦女를欺罔하여 姦淫한者는2年以下의懲役또는 5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삭 제>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삭 제>
第306條(告訴) 第297條乃至第300條와第302條乃至第305條의罪는 告訴가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306條(告訴)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
第307條(名譽毁損) ①公然히事實을摘示하여사람의名譽를毁損한者는2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5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307條(名譽毁損) ①----------징역----------
②公然히虛僞의事實을摘示하여 사람의名譽를毁損한者는5年以下의懲役, 10年이하의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	②----------징역 ----------

한다.	----.
第308條(死者의名譽毁損) 公然히 虛僞의事實을摘示하여死者의名譽를毁損한者는2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5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308條(死者의名譽毁損) ----------징역----------.
第309條(出版物等에依한名譽毁損) ①사람을誹謗할目的으로新聞, 雜誌또는라디오其他出版物에依하여第307條第1項의罪를犯한者는3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7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309條(出版物等에依한名譽毁損) ①----------징역----------
②第1項의方法으로第307條第2項의罪를犯한者는7年以下의懲役, 10年이하의資格停止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징역 ----------
第311條(侮辱) 公然히사람을侮辱한者는1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또는2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311條(侮辱) ----------징역----------
第316條(秘密侵害) ①封緘其他秘密裝置한사람의便紙, 文書또는圖畵를開封한 者는 3年以下의	第316條(秘密侵害) ①----------

懲役이나禁錮또는5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②(생 략)	징역----------. ②(현행과 같음)
第317條(業務上秘密漏泄) ①醫師, 韓醫師, 齒科醫師, 藥劑師, 藥種商, 助産師, 辯護士, 辨理士, 公認會計士, 公證人, 代書業者나그職務上補助者또는此等의職에있던者가그業務處理中知得한他人의秘密을漏泄한때에는 3年以下의懲役이나禁錮, 10年以下의資格停止또는7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②(생 략)	第317條(業務上秘密漏泄) ①----징역----------. ②(현행과 같음)
第325條(占有强取, 準占有强取) ①暴行또는脅迫으로他人의占有에屬하는自己의物件을强取한者는7年以下의懲役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에處한다 ②·③(생 략)	第325條(占有强取, 準占有强取) ①----------징역---------- ②·③(현행과 같음)
第331條의2(自動車등 不法使用) 權利者의 同意없이 他人의 自動車, 船舶, 航空機 또는 原動機裝置自轉車를 일시 사용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500萬원이하	第331條의2(自動車등 不法使用) ----------

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 벌금 또는 구류----------.
第332條(常習犯) 常習으로 第329條 내지 第331條의2의罪를犯한者는그罪에定한刑의2分의1까지加重한다.	<삭 제>
第341條(常習犯) 常習으로第333條, 第334條, 第336條또는前條第1項의罪를犯한者는無期또는10年以上의懲役에處한다	<삭 제>
第342條(未遂犯) 第329條 내지 第34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42條(未遂犯)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3조부터 제340조까지--------.
第344條(親族間의犯行) 第328條의規定은第329條乃至第332條의罪또는未遂犯에準用한다	第344條(親族間의犯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및 제331조의2-------
第345條(資格停止의併科) 本章의罪를犯하여有期懲役에處할境遇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삭 제>
第348條의2(便宜施設不正利用) 부정한 방법으로 對價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기타 有料自動設備를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	第348條의2(便宜施設不正利用) ----------

을 취득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50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 벌금 또는 구류----------.
第351條(常習犯) 常習으로第347條乃至前條의罪를犯한者는그罪에定한刑의2分의1까지加重한다	<삭 제>
第352條(未遂犯) 第347條 내지 第348條의2, 第350條와 第351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52條(未遂犯) ---------- 제350조----------.
第353條(資格停止의併科) 本章의罪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삭 제>
第358條(資格停止의併科) 前3條의罪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를併科할수있다	<삭 제>
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①遺失物, 漂流物또는他人의占有를離脫한財物을橫領한者는1年以下의懲役이나300萬원以下의罰金또는科料에處한다	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①---------- ----------벌금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第363條(常習犯) ①常習으로前條의罪를犯한者는1年以上10年以下의懲役에處한다	<삭 제>

②第1項의境遇에는10年以下의資格停止또는1千500萬원以下의罰金을併科할수있다	
第364條(業務上過失, 重過失) 業務上過失또는重大한過失로因하여第362條의罪를犯한者는1年以下의禁錮또는500萬원以下의罰金에處한다.	第364條(業務上過失, 重過失) ----------징역----------.
第365條(親族間의犯行) ①前3條의罪를犯한者와被害者間에第328條第1項, 第2項의身分關係가있는때에는同條의規定을準用한다	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제362조 및 제364조----------
②前3條의罪를犯한者와本犯間에第328條第1項의身分關係가있는때에는그刑을減輕또는免除한다 但身分關係가없는共犯에對하여는例外로한다	②제362조 및 제364조----------